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15호 2019. 12. 6.(금)

공 고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85

회람							
----	--	--	--	--	--	--	--

목포시 공고 제2019-1690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민선7기 시정 추동력 확보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부서별 소속 변경사항 및 분장 사무 등을 조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괄 : 9국 2실 43과 237팀 → 9국 1실 44과 237팀 (실 △1, 과 ⊕1)

나. ‘국’ 단위 개편

구 분	개 편 내 용	비 고
국 분리	○ 관광경제국 → <u>관광문화체육국</u> + <u>경제산업국</u>	관광과 경제 분리
명칭변경	○ 기획문화국 → <u>기획관리국</u>	
통 폐 합	○ 환경관리사업단+상하수도사업단 → <u>환경수도사업단</u>	

다. ‘과’ 단위 개편

구 분	개 편 내 용	비고
명칭변경	○ 기업유치실 → <u>기업유치과</u> ○ 문예시설관리사무소 → <u>문예시설관리과</u>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u>체육시설관리과</u> ○ 남해수질관리과 → <u>남해수질관리사무소</u> ○ 북항수질관리과 → <u>북항수질관리사무소</u>	

구 분	개 편 내 용	비고
소속변경	○ 기업유치실 → 경제산업국 ○ 기획문화국 기획예산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 기획관리국 ○ 기획문화국 문화예술과 → 관광문화체육국 ○ 자치행정복지국 교육체육과 → 관광문화체육국 ○ 관광경제국 관광과 → 관광문화체육국 ○ 관광경제국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 → 경제산업국 ○ 환경관리사업단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 → 환경수도사업단 ○ 상하수도사업단 수도과, 하수과 → 환경수도사업단 ○ 상하수도사업단 남해수질관리과 북항수질관리과 → 남해수질관리사무소, 북항수질관리사무소(사업소) ○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 → 관광문화체육국	
구 분	개 편 내 용	비고
순위조정	○ 관광문화체육국 - 관광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문예시설관리과, 체육시설관리과, 목포자연사박물관 ○ 경제산업국 - 지역경제과, 기업유치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 ○ 환경수도사업단 -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 수도과, 하수과	

라. ‘팀’ 단위 개편

구 분	개 편 내 용	비고
신 설	○ 관광과 맛의도시 ○ 공보과 SNS홍보	
통 폐 합	○ 관광과 관광마케팅 + 축제 → 관광마케팅 ○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 + 조명관리 → 도시경관	
기능강화	○ 기획예산과 지역발전 → 정책개발 ○ 문화예술과 어린이도서관운영 → 도서관운영	
소속변경	○ 기업유치실 3담당 → 경제산업국 기업유치과 ○ 기획예산과 5담당 → 기획관리국 ○ 공보과 2담당 → 기획관리국 ○ 세정과 9담당 → 기획관리국 ○ 회계과 4담당 → 기획관리국 ○ 정보통신과 4담당 → 기획관리국 ○ 관광과 6담당 → 관광문화체육국 ○ 문화예술과 4담당 → 관광문화체육국 ○ 교육체육과 5담당 → 관광문화체육국 ○ 문예시설관리사무소 5담당 → 관광문화체육국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2담당 → 관광문화체육국 ○ 목포자연사박물관 4담당 → 관광문화체육국 ○ 지역경제과 5담당 → 경제산업국 ○ 일자리청년정책과 3담당 → 경제산업국 ○ 해양항만과 4담당 → 경제산업국 ○ 수산진흥과 4담당 → 경제산업국 ○ 농업정책과 4담당 → 경제산업국 ○ 환경보호과 4담당 → 환경수도사업단 ○ 자원순환과 4담당 → 환경수도사업단 ○ 환경시설관리과 3담당 → 환경수도사업단 ○ 수도과 7담당 → 환경수도사업단 ○ 하수과 5담당 → 환경수도사업단 ○ 남해수질관리과 4담당 → 남해수질관리사무소 ○ 북항수질관리과 3담당 → 북항수질관리사무소	

마. 업무이관

부 서 명	업 무 명	인수부서
지 역 경 제 과	○ 공예품 개발 및 지원	문 화 예 술 과
	○ 국제 카페리선 취항 업무 지원	해 양 항 만 과
사 회 복 지 과	○ 응급구호 업무 ○ 재해이재민 수용 및 구호관리 ○ 그밖에 구호에 관한 사항	안 전 총 괄 과
일자리청년정책과	○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자 치 행 정 과
기 획 예 산 과	○ 지방분권 총괄 ○ 지역단위 분권 네트워크 구축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관련업무 추진	자 치 행 정 과
	○ 주민친절도 등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시행	민 원 봉 사 실

바. 업무신설

부 서 명	업 무 명	비 고
기 획 예 산 과	○ 정부 지역발전정책 연계 정책개발 ○ 국·도정과제 대응방안 수립 및 세부실천과제 추진 ○ 공모사업 대응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 공모사업 예측·분석 및 전략적 활용방안 개발 ○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지원	정 책 개 발 팀
	○ 적극행정 계획수립 및 추진 총괄	법 무 혁 신 팀
공 보 과	○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 SNS(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트위터 등) 목포시 계정 운영 ○ SNS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SNS 서포터즈 및 블로그 기자단 관리 ○ SNS 활용 교육에 관한 사항	S N S 홍 보 팀
관 광 과	○ 음식관광 마케팅 및 대표음식 브랜드화 사업 추진 ○ 으뜸맛집 선정 및 관리운영 ○ 명인·명가 지정 및 관리운영 ○ 음식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 ○ 음식특화거리조성 ○ 음식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관리 ○ 외식업소 역량강화 지원 사업 추진	맛 의 도 시 팀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 제13조

7. 규제심사(심의) 대상 여부검토 : 해당없음

8.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사항없음

9. 입법예고 : 2019. 12. 6. ~ 12. 10.(4일간)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적은 행정조직내 부 인력 조정 사항이며, 조직개편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 축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목포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 입법 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10.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11.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우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자치행정과)]

12.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3439, FAX 270-87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감사실장·기업유치실장**” 을 “**감사실장**” 으로 한다.

제3조의2, 제3조의3을 삭제한다.

제2장 제2절의 제목 “**기획문화국**” 을 “**기획관리국**” 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획문화국**)” 을 “(**기획관리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과장·문화예술과장·공보과장·세정과장·회계과장**” 을 “**기획예산과장·공보과장·세정과장·회계과장**” 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기획조정
2. 시 종합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사업의 타당성 분석 포함)
3. 시정목표 설정과 시책 및 사업 책정
4. 주요 업무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5.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 처리
6. 총리실 훈령 및 지시사항 처리
7. 장관, 도지사 지시사항 처리
8. 시장 지시사항 처리 및 추진결과 확인
9. 주요시정 추진상황 확인 및 자체평가
10. 제안제도 운영
11. 시장 공약사항 처리
12. 시정현황 작성
13.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14. 시정시책 개발
15. 시정운영 성과작성, 2020 목포발전 비전수립 추진

16. 확대간부회의 운영
17. 정책실명제 운영
18. 국책사업 지원
19. 성과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0. 창의학습 연구동아리 운영
21. 시의회 운영 지원 및 의회사무국과의 협조 조정
22. 시의회의 시정 질의 답변서 작성 총괄 및 답변사항 관리
23.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준비 총괄
24. 시의회 동향관리
25. 시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재의 요구
26. 도의회에 관한 사항
27. 상황실 관리 운영
28.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공기업 특별회계 제외)
29. 예산집행 계획 수립, 배정, 관리 업무
30. 교부세 관리
31. 국도비 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32.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및 예비비 사용승인
33.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34.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 운영
35. 지방채무 승인신청 및 지방채무 관리
36. 기금운영계획 종합 총괄 및 관리
37. 투·융자 심사
38. 용역과제 사전심의
39. 경영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
40. 특정사업과 공기업의 경영분석
41. 전시 예산 편성
42.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43. 조례·규칙의 입안 심사 및 공포
44. 훈령, 예규, 질의 등 주요문서의 심사
45. 법령 질의, 해석 조정 통제
46.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
47. 전시 법령의 정비
48. 행정심판 청구에 관한 사항
49. 소송사무 종합 조정

50. 법무민원 상담
51.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52. 고문변호사 운영
53. 그 밖의 법제 및 송무에 관한 사항
54. 거주외국인 각종 법률상담 지원
55. 지역발전계획 종합수립 및 평가
56.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및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 추진
57.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58. 지역특화발전 특구선정 및 지원
59. 균형발전 업무 총괄
60. 지역단위 균형발전 네트워크 구축
61. 지방대학 발전역량 강화사업 관련 업무 추진
62. 지역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63. 공공부문 경영혁신
64. 신활력 지역사업 및 지역전략 산업의 발굴·지원
65.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에 관한 사항
66.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67.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68.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69.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70.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71.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72. 「지방규제 신고고객 보호」 제도 운영
73.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74.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75. 「지방 규제개선위원회」 운영
76. 인·허가부서 대상 특별전문교육 지원
77. 「지방규제정보 지도시스템」 운영
78. 「지방규제 지수」 운영
79.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개최
80. 광역행정망 추진
81. 서남권 행정협의회 운영
82. 서남권 공동발전계획 수립·추진
83.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84. 인구유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85. 저출산 인구감소 종합 대책 수립
86. 저출산 지역맞춤형 시책 개발
87.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88. 지역인구 통계 분석 및 진단
89. 중앙-지자체-민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90. 인구정책 조례, 위원회 등 제도적 기반 구축
91.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운영
92. 정부혁신 대응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93. 정부혁신 추진과제 발굴 및 관리
94. 정부혁신 추진체계 구축·운영
95. 정부혁신 교육·홍보 및 성과관리
96. 세무조사·채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97.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98.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99. 지역밀착형 생활SOC 관련 업무
100. 정부 지역발전정책 연계 정책개발
101. 국·도정과제 대응방안 수립 및 세부실천과제 추진
102. 공모사업 대응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103. 공모사업 예측·분석 및 전략적 활용방안 개발
104.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지원
105. 적극행정 계획수립 및 추진 총괄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 제18호를 “SNS 활용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을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종합계획 수립”으로 하고,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SNS(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트위터 등) 목포시 계정 운영
20. SNS 콘텐츠 제작 및 홍보
21. SNS 서포터즈 및 블로그 기자단 관리
22. SNS 활용 교육에 관한 사항

제10조 중 “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를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로 한다.

제11조 제116호부터 제1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6. 지방분권 총괄
- 117. 지역단위 분권 네트워크 구축
- 118.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 119.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관련업무 추진
- 120.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3조) 중 제9호, 제11호,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중전의 제16조)에 제1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8. 주민친절도 등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시행

제2장 제4절의 제목 “**관광경제국**”을 “**관광문화체육국**”으로 한다.

제17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6조(중전의 제17조) 제목 “(**관광경제국**)”을 “(**관광문화체육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해양항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수산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를 “**문화예술과장·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예시설관리과장·체육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18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7조(중전의 18조) 제61호부터 제67호 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1. 음식관광 마케팅 및 대표음식 브랜드화 사업 추진
- 62. 으뜸맛집 선정 및 관리운영
- 63. 명인·명가 지정 및 관리운영
- 64. 음식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
- 65. 음식특화거리 조성
- 66. 음식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관리
- 67. 외식업소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 문화·예술행사 운영(시립예술단체 행사 제외)
3.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지도 육성
4. 문예진흥기금 운영·관리
5.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7.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8. 평화광장 야외무대 유지 관리
9. 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10.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관리
11. 출판사 및 인쇄소 신고, 변경신고 및 관리
12. 공연장 등록·변경·폐업처리·승계사항 처리
13. 공연장 지도·감독
14. 영화상영 신고 수리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16.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17.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18. 거주외국인 각종 문화예술행사 초청 및 참여
19. 거주외국인 지역유적지 답사, 문화체험, 각국 기념일 행사 지원
20. 전시작품 구입 및 수집에 관한 사항
21.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유치, 조성
22. 유달예술타운 운영·관리
23.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24. 목포문화재단 운영지원 및 지도
25. 작은도서관 조성 및 관리지도
26. 어린이도서관 운영 관리
27. 영어도서관 운영 관리
28. 연산완충녹지 야외공연장 사용승인
29.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운영·관리
30.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1. 공예품 개발 및 지원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교육체육과) 교육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분야 지원 및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
2. 초·중·고 우수학생 표창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초·중·고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4.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목포장학재단 지도감독 및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7.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사항
9. 평생교육 발전계획 수립 및 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
10.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11.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2.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4. 평생학습 정보 제공 및 학습 상담에 관한 사항
15. 평생학습 축제 개최에 관한 사항
16. 평생학습 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7. 평생교육 강사풀제 운영에 관한 사항
18.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9. 목포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0. 목포시 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1. 평생교육 기관, 동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지원
22. 동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3. 동 주민사랑방 강사, 자원봉사 요원 지원
24. 동 주민사랑방 물품관리 일반사항
25. 동 주민사랑방 운영실적 평가 분석
26. 동 주민사랑방 운영비 등 경상예산 지원
27. 동 주민사랑방 거주외국인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8.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9. 서남권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30. 성인 문해 교육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1.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32. 거주외국인에 대한 사회적응(한글 및 한국어) 교육 지원

33. 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34. 재단법인 체육진흥회업무에 관한 사항
35.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36.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및 지도·육성
37. 생활체육 동호인 지도·육성
38. 각종 생활체육 동호인대회 지원 및 운영·관리
39. 체육회 관련 업무지도
40. 각종 체육행사주관 및 지도·관리
41.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시설 설치
4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상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 등 지도·감독
43. 체육회소속 경기단체 주관 자전거대회 지원 업무
44. 직장체육활동의 지원
45. 직장 체육팀의 지도·육성
46. 직장운동부 운영관리 (하키팀, 육상팀, 축구팀)
47.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48.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49. 스포츠 이벤트 개최
50. 스포츠 마케팅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1. 스포츠�관광 홈페이지 구축
52. 스포츠�관광 프로그램 발굴
53. 청소년 스포츠클럽 지도·감독
54. 목포축구센터 지도·감독
55. 거주외국인 각종 체육행사 초청 및 참여 지원
56. 기타 체육업무에 관한 사항
57.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기본계획 수립
58.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운영위원회 구성
59.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운영 지원
60.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개최 홍보
61. 전국체전·장애인체전 문화예술행사 추진
62. 목포종합운동장 건립
63. 그 밖에 전국체전·장애인체전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문예시설관리과) 문예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방호·방화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2. 입장권(열람권) 등의 발급·검인·검표, 시설물 사용료 징수 등
3. 재산관리·시설물 종합관리 및 개보수 등 영선에 관한 사항
4. 조경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5. 냉난방, 통신, 전기, 기계, 음향, 소방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관리
6. 문화예술전시·공연행사 홍보 및 기록유지
7. 공연계획 및 공연장 대관 사용에 관한 사항
8. 공연물 제작·홍보 및 공연물품 수급에 관한 사항
9. 관람객 안내 및 안전관리
10. 공연장, 연습실, 분장실관리
11. 전시계획 및 전시실 대관 사용에 관한 사항
12. 소장품 관리 및 미술활동의 홍보·보급에 관한 사항
13. 전시 소품, 공연 소품 유지관리
14. 기타 무대운영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15. 시민문화체육센터(공연장,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사항
16. 목포문학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체육시설관리과) 체육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청사 방호·방화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사용료 관리
5. 체육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7. 체육시설 운영관리
8. 궁도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부주산 체육시설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0. 각종 기계장비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목포자연사박물관장) 목포자연사박물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및 입장권 매·검표 관리
2. 재산관리·청사 시설유지 관리 및 방화·방호에 관한 사항
3. 전시시설 임대에 관한 사항
4. 관람객 안내 및 안전관리
5. 박물관 정보시스템(전산·영상·홈페이지)운영 관리
6. 박물관에 관한 백서, 간행물의 제작 및 대외홍보 사항
7.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연구회 등 개최
8. 박물관 특별전시 및 기획전시 계획수립 및 시행
9. 박물관 잔디공원, 비파원 및 주차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박물관의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타 박물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2. 소장품의 조사·연구 및 수집, 기증, 기탁에 관한 사항
13. 소장품 관리·전시 및 전산화 등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장품 훈증 및 소득, 복원에 관한 사항
15. 소장품 보존 환경조사 연구 및 지원 사항
16. 자연사에 속하는 지질, 동·식물, 곤충, 해양생물, 조·포유류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7. 자연사 및 향토사 조사 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및 지원
18. 향토문화자료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9. 학술조사 연구 및 연구결과의 보급, 선양에 관한 사항
20.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품 관리
21.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수장고 소장유물 관리
22.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회 개최
23. 목포생활도자박물관 활성화계획 수립·추진
24.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품 수집 및 연구
25. 도자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6. 체험공방 프로그램 운영
27.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전시품 관리
28.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수장고 소장품 관리
29.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정보시스템(전산·영상·홈페이지) 운영 관리
30.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전시회 개최
31.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활성화계획 수립·추진
32. 그 밖의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장 제5절의 제목 “**안전도시건설국**” 을 “**경제산업국**” 으로 한다.

제2장 제5절에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경제산업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지역경제과장·기업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해양항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수산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0조를 삭제하고,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30조 및 제31조로 한다.

제25조의2를 제32조로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2장 제6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로 하고,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정책 종합 기획·조정 협의
2. 지역경제발전 기본계획 수립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교육
4. 지역경제 동향파악 관리
5. 경기분석 및 지표작성 관리
6. 경제자료 작성 및 관리
7.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경제정책 협의
8. 대규모 점포 등록·지도관리
9. 전남서남부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 지도·감독
10. 담배 도·소매업 등록 및 지도·감독
11. 전자상거래 업무 추진
12. 상거래질서 확립(가격표시제)
13. 미터법 통일 지도
14. 계량기 수리검정, 검사 및 부정계량기 단속
15. 계량기 수리업소 지도·감독
16. 물가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 총괄

17. 물가동향의 종합분석 및 조정
18.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19. 공공요금, 관인요금의 관리
20. 소비자 고발처리 및 보호대책 수립
21. 새마을금고의 합병 또는 분할의 승인
22. 지역경제분야 금융지원 업무 및 금융통화 자료 관리
2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계획
2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징수
25. 「복권 및 복권기금법」 홍보 및 계도
26. 복권위원회 업무협조, 지원
27. 대부업 등록, 변경, 폐업신고
28. 대부업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지도·감독
29. 상표관리(부정경쟁 방지업무)
30. 방문·통신판매업 등 신고 수리 및 지도·감독
31. 품질표시 상품단속
32. 공산품 품질조사 및 불량공산품 단속
33. 으뜸장인상(제조업) 제도 운영
34. 상정·소상공인 업무
35. 지식기반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36.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기구 설치 운영
37. 첨단(신소재·나노·바이오 등)산업 발굴·육성 및 지원
38. 첨단과학연구단지의 조성지원 사업
39.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 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
40. 과학기술정보교류·홍보 및 학술활동 지원
41. 과학기술 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42. 대학내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시설(연구소 및 센터)운영 지원
43.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사업
44.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자문관 활용 사업 지원
45. 기업체 기술지도 종합기획 조정
46. 지역기술 혁신센터(TIC) 지원
47. 정보벤처산업 육성 및 벤처지원센터 운영
48. 지역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추진
49.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 관리
50.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 관리

51. 문화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52. 상공회의소 지원 업무
53. 국가산업단지 및 입주업체 지원
54. 국가산단 투자환경개선 추진
55. 지방산업단지 관리업무 지원
56. 삼진산업단지 분양 및 지도·감독
57. 산정농공단지 분양 및 지도·감독
58. 농공 및 산업단지 시설물 관리 및 유지 관리, 입주계약(변경)
59. 농공 및 산업단지 공장설립 완료 신고
60. 농공 및 산업단지 임대신고 및 분양 신고
61. 산업자원동원 충무계획수립 시행
62. 보세지역 지정에 관한 업무
63. 지역 연구센터(RIC) 사업 육성
64. 노동조합 설립신고 변경·해산 신고
65.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66. 노동조합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
67.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 및 공고
68. 노동조합 과태료 부과·징수
69.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신고수리, 중지명령
70. 노동조합 단체협약체결 신고수리 및 시정명령
71. 노동조합 노동관계의 지원
72. 직장폐쇄의 신고·수리
73. 목포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 및 운영
74. 유망 중소기업 육성·지도
75. 다른 기관 중소기업 자금 지원
76. 중소기업제품 홍보·판매·참가 지원
77. 지방중소기업 육성 종합기획 조정
78. 기업애로사항 지도 및 해결·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79. 제조업체 현황조사 및 관리
80. 공장등록증 민원 발급
81. 공장설립 등록 및 사후관리(폐업, 변경 등)
82. 공장의 소유자에 대한 보고·검사 등
83. 조선 관련 산업 지원 및 육성
84. 노동자 참여 세미나, 선진지 견학, 교육 등 지원 및 운영

85. 목포시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
86.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
87. 창업사업계획 승인 협의
88. 창업예비학교 운영
89. 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
90. 신산업 동향 파악 및 신산업 발굴 육성
91. 미래전략산업 업무 종합 기획·조정
92.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 조정·지원
9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시책 발굴 지원
94. 4차 산업혁명 관련 동향 및 정보 파악·전파
95.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및 공약사업 추진
96.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추진
97.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추진
98. 신재생에너지 공동 특화사업 발굴 추진
99. 국제통상진흥시책 개발연구 및 종합기획 조정
1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원 업무
101.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102. 수출진흥 계획 수립 추진(공산품, 가공식품, 농수산물)
103. 수출업체 육성·지원 및 유망수출제품의 해외 홍보
104. 수출입 계획·실적 총괄
105. 수출입 정보 및 자료 관리
106. 수출종합상담실 운영
107. 바이어 초청·안내·지원
108. 국제교류 협력증진 시책 연구
109. 국제자치단체간 자매결연 및 친선 우호협력 업무
110. 외국 민간단체와의 교류협력 업무
111. 외국 자치단체간 교류 인사영접 및 안내
112. 외국어 통역·번역 지원
113.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방안 연구
114. 산업통상자원부소관 업무 중 다른 실과에 분장되지 아니한 사항
115. 지방해양수산청(항만관련부서 소관 제외) 업무 협의
116. 투자유치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조정
117. 투자유치 지원제도·시책 및 인센티브 개발
118. 투자 유치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관리·자료제공 등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119. 투자유치기업 재정지원제도 운영
120.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
121.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 지원
122. 국내 잠재투자가 발굴 및 DB구축
123. 출향기업 등 국내기업 정보 수집 및 관리
124. 투자유치 프로젝트개발 및 타당성 분석
125. 투자유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26. 잠재투자가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
127. 유치기업 행정지원 및 고충사항 처리
128. 투자유치 원스톱(ONE-STOP)서비스 지원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129. 국내 · 외 기업 투자유치 추진
130.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관련업무 총괄
131. 민간 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업무
132. 민간기업 외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133. 외자유치 업무
134.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 지원
135. 외국인 투자가 정보수집 및 관리
136. 외국인 투자기업 고충 처리반 운영
137.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업무
138. 외국인 투자기업 사후관리
139. 외국인 투자지원(FOLLOW-UP) 관리에 관한 사항
140. 해외투자유치 전략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141. 해외투자 시장 분석
142. 해외투자자 초청 상담
143.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해외박람회 참가
144. 해외투자 발굴 및 투자유치단 파견
145. 외자투자 · 유치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146. 투자유치 전반에 관한 사항
147. 산업단지 입주계약 심사 및 체결
148.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추진
149. 연료수급의 종합계획 수립
150.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 관리
151. 전기설비 사후관리
152. 발전사업 허가 및 수급계약 인가

153. 유류수급 조정
154. 석유류판매업 등록 및 지도(품질관리 등)·감독
155. 석탄가공업 허가 및 지도·감독
156. 에너지관리 소비절약 추진
157. 에너지관리 지정업체 지도·감독
158.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체 지도·감독
159. 열관리 시공협회 위탁업무 지도·감독
160. 가스안전관리 계획 수립
161.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판매, 저장, 제조업, 충전)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
16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지도·감독
163.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164.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및 사용시설 사후 관리
165. 가스시설 시공자 지도·감독
166.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 지도·감독
167.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운영·지도·감독
168. 에너지밸리 관련 업무 추진

제25조(기업유치과)

기업유치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대양 및 세라믹 산단 기업유치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2. 대양 및 세라믹 산단 기업유치 One-Stop 서비스 지원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3. 대양 및 세라믹 산단 기업유치 협약체결 및 사후관리
4. 대양 및 세라믹 산단 기업유치 각종 보조금 집행 및 관리
5. 대양 및 세라믹 산단 기업유치 지원시책 및 인센티브 개발
6. 대양일반산업단지 분양계약지원에 관한 업무
7. 세라믹일반산업단지 분양계약지원에 관한 업무
8. 대양 및 세라믹 산단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 및 MOU체결
9. 대양 및 세라믹 산단 기업유치 관련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
10. 대양 및 세라믹 산단 기업유치에 관한 국·내외 투자가 상담
11. 대양 및 세라믹 산단 기업유치 활동 대언론 홍보
12. 대양 및 세라믹 산단 기업유치 관련 동향보고 및 실적관리
13. 대양 및 세라믹 산단 유치기업 상담 및 고충 처리
14. 대양 및 세라믹 산단 기업유치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 등 지원
15. 대양 및 세라믹 산단 기업유치 투자유치자문관 운영·지원

16. 대양 및 세라믹 산단 기업유치 투자설명회 개최
17. 대양 및 세라믹 산단 외자유치 업무
18. 대양 및 세라믹 산단 잠재투자가 발굴 및 DB구축
19. 대양 및 세라믹 산단 민간 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업무
20. 대양 및 세라믹 산단 민간기업 외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21. 대양 및 세라믹 산단 외자유치 업무 추진
22. 대양 및 세라믹 산단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지원
23. 대양 및 세라믹 산단 외국인 투자기업 사후관리
24. 대양 및 세라믹 산단 외국인 투자지원(FOLLOW-UP) 관리에 관한 사항
25. 대양 및 세라믹 산단 해외투자자 초청 상담
26. 대양 및 세라믹 산단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해외박람회 참가
27. 대양 및 세라믹 산단 투자유치기업 재정지원제도 운영
28. 신산업(바이오, 드론, 로봇,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기업유치 업무 총괄
29. 산업단지 조성(공사부분) 및 대지조성사업
30. 산업단지 기업유치 기반시설 지원(토지 분할 등)
31. 산업단지 실시계획 인허가 업무
32. 대양산단 금융약정 관련 사항
33. 대양산단 청산관련 사항
34.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취득 및 처분업무

제26조(일자리청년정책과)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2. 목포시 일자리 총괄 관리
3. 취업정보센터운영 및 취업알선
4. 일자리창출 우수시군에 대한 업무
5.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업무
6. 고용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업무
7. 일자리안정자금에 관한 업무
8. 협동조합기본법 추진에 관한 사항
9. 일자리지원에 관한 사항
10.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취업알선
11. 청년 직장체험 연수시행
12. 기능경기대회 지원

13. 사회적 기업에 관한 사항
14. 공공직업훈련원 지원 및 협조
15. 고용촉진훈련 업무 전반 (계획수립, 지원, 훈련기관 지도·감독)
16.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
17. 무허가 직업안내 행위 등 지도·단속
18.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9. 재정지원사업(지역공동체, 공공근로)에 관한 업무
20.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21.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관한 업무
22. 산학연 연관 사업에 관한 업무
23.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업무
24. 전남 청년 마을로, 내일로 프로젝트 추진
25. 전남 동행 일자리사업 추진
26.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27. 4050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28.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9. 청년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 구축 지원
30. 청년 인력 양성 및 지원
31. 청년 관련 단체 지원 및 관리
32. 청년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33. 청년취업 및 창업·창직 지원
34. 청년일자리 신규시책 발굴 및 사업화 추진
35.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취업컨설팅 지원

제27조(해양항만과)

해양항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만개발·정비관련 지원 및 협의
2. 목포신항·내항·남항·대불항 등 5개항의 특화개발 사업
3. 해양개발 기본계획수립
4.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 추진
5. 해양오염 사고 수습 및 방제 작업
6. 해양오염 예방 및 오염행위 지도 단속
7. 적조 관리 및 피해복구
8. 해양시설 지도·점검

9. 바다청소에 관한 사항(바다의 날 행사 등)
10. 해양오염방제 장비 및 기기 관리
11. 어촌계 오물소각장 시설 사업
12. 방치 폐어선 처리, 폐선 처리소 설치 및 사후관리
13. 어항(어촌정주어항 포함) 개발 및 시설 사용 승인 및 사후 관리
14. 해양환경보전 및 습지 보전에 관한 사항
15. 해양개발 민자유치 추진
16. 해양주제공원 조성(광장공원, 선박박물관, 어촌민속촌, 수족관, 세계해양 영웅 역사관 등)
17. 해양수산행정협의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등 위원회 관리
18. 목포신항 배후지역 개발
19. 물류단지 조성 지원 및 물류창고업 등록
20. 화물 항로개설 및 취항 관련 업무
21. 항만 물동량 확보업무 지원 및 협의
22. 항만 물류관련단체 지원 협력업무
23. 항만 정보화사업 지원
24. 항만부지이용 및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25.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
26. 어민복지회관 건립 사업 추진 및 사후 관리
27. 도서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
28. 어촌(도서)종합 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
29. 연안정비관리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0.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운영
31. 연안관리 정보체제 구축
3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추진·변경 및 관리
33. 공유수면관리 및 점사용 허가
34. 연안개발 관련 연구 조사
35. 명예연안관리인 위촉 및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36. 연안체험활동 신고 수리 및 과태료 부과 징수
37. 연안사고 예방업무
38. 행정선 운영관리 및 선원 관리감독
39. 소규모 연륙, 연도교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40. 도서(섬)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
41. 양식어장 유료 낚시터 지정 관리
42.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사업

43. 낚시어선 어업에 관한 사항
44. 해양레저시설 관리계획 수립 및 설치 지원 협의
45. 해상마리너(요트) 시설 설치 추진
46. 해맑은호 관리 및 요트스쿨 운영, 관련 인력 채용 등
47. 관광유람선 운항 활성화 지원
48. 해양레저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49. 섬주민 지원사업 추진
50. 갯바위 유람선 운항 활성화 지원
51. 국제 카페리선 취항지원 업무

제28조(수산진흥과)

수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수산진흥 종합기획 조정
2. 수산물 유통보급 시설 건립 및 수산시설 재해대책 총괄
3. 수산분야 WTO/DDA/FTA 대응대책
4. 육상양식 종묘생산 및 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
5. 특정어구 사용금지 승인
6. 수산동식물 이식 승인
7. 수산단체 및 어업후계 인력 육성 관리
8. 수산자원 조성사업 및 보존(보호)지역 지정 관리
9.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연근해 어업허가, 신고어획물 운반업 등록)
10. 불법어업 근절대책 추진 및 지도 단속
11.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바다 목장화 조성
12.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및 선원 관리 감독
13. 수산물 생산계획 수립 및 수급종합계획
14. 천일염산업 육성 및 염(함수) 관리
15. 수산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16. 수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및 귀어가 지원사업
17. 어선안전조업 종합대책 수립 및 지도단속
18. 어업질서 확립 자금지원사업 및 사후 관리
19.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20.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21. 어로분쟁 조정 및 어업협정(국제규제)에 관한 사항
22. 내로시설사업 및 추진관리

23.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24. 양식어장, 어장구역, 어장정화 지원·지정 및 관리
25. 어선법위반행위자 처벌 및 과태료 부과
26. 어선 및 어선원 공제 가입제도 지도
27. 어선 피해조사 및 복구
28. 어선등록 관리 및 세력조사
29. 어선 건조·개조 발주허가 및 불법 건조·개조 지도 단속
30. 연근해 어업 허가·신고 및 어획물 운반업 등록
31. 어업면허·어업권 관리, 어업피해 보상 및 재결
32. 어구, 수산증양식 사업 추진 및 사후 관리(피해복구)
33. 소형기선 저인망 정리 사업
34. 거주외국인 어업 관련 종사자 지원
35. 수산물 보급 유통시설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36. 수산물 물류표준화(포장용기 등)에 관한 사항
37.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소비 촉진
38. 수산물 수출 및 수입수산물 유통정보 관리
39. 수산물 가공업 등록 및 신고와 업체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40.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및 행정처분
41. 수산물 품질인증 등 브랜드 개발
42. 수산물 생산 이력제 관련 업무
43. 고기능수산물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44. (재)목포수산물유통센터 및 (재)목포수산물지원센터 지도감독 관리
45. 해양수산융복합벨트 사업추진(국립 김산업연구소 건립, 수산기자재산업육성 클러스터, 수산물수출단지 조성)
46. 국제해양수산박람회 유치 업무
47.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국립수산기자재진흥원 등 관련 기관 유치
48. 재해보험(어선원재해보상, 어선, 어업인안전 보험료 등)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장관리
2. 재래시장 현대화사업(활성화운영위원회 포함) 추진
3. 재래시장 판로촉진 및 홍보지원

4. 재래시장 상인교육
5. 재래시장 빈 점포 활용 촉진
6. 재래시장 공동사업 활성화
7. 재래시장 상거래 현대화 촉진
8. 재래시장 및 원도심권 상품권 발행·관리
9. 농산물유통 종합계획 수립 추진
10. 농산물 상설직판장 설치·운영지도
11. 농산물 전시판매장 시설관리, 입주단체관리, 직거래 알선
12. 농산물 포장센터 설치, 지도 관리
13.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추진 및 지도
14. 시 단위 농산물 임시 직판행사 개최(국내)
15.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사후관리 지도
16. 농산물 가공업체 포장 개선사업
17. 농산물 가공업체 원료구입 자금지원
18. 농산물 공판장 건설 및 사후관리 지도
19.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및 지도육성
20. 대도시 백화점 농수산 특산물 판촉행사
21. 농산물원산지 표시 및 단속
22. 농산물 수입개방대책에 관한 사항
2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농지원부 관리(기재사항 변경 등)
24.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25. 농업인 자녀 농과계 학자금 지원
26. 농업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27. 농가 도우미 사업
28.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29. 농정심의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30. 농지개량사업 추진
31.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
32. 농지전용의 사후관리
33.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34. 농지불법전용 단속
35. 쌀 소득보전 등 직접지불제 사업
36.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직불사업
37. 양곡수급 계획과 조절

38. 양곡보관 및 수송관리
39. 양곡의 가공 및 조작
40. 양곡수불
41. 양곡 도정업 등록
42. 정부양곡 특별회계 운영
43. 양곡부산물 처리
44. 곡가 동태 조사 및 조절
45. 교환양곡 관리
46. 미곡담보융자 및 양곡예매자금 방출
47. 양곡 사고 처리
48. 양곡관리대행기관 및 양곡가공공장 지도
49. 농업경영인회 육성사업
50. 전업농 육성사업 및 사후관리
51. 농민 신문보급, 농어업인 경영정보 제공
52. 창업 후계농업인 대상자 선정 및 현장지도
53. 여름철 현장영농 교육
54. 새해 영농설계 교육
55. 친환경농업 직접 직불제
56. 농업인 품목별 상설교육
57.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58. 분배농지 및 귀속농지 관리
59.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60.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61. 농촌 PC보내기 지원사업
62. 친환경 농업
63. 친환경 축산 직접지불제 사업
64. 소득작물 개발 및 농산물 수출지도
65. 농업 경영개선 및 협동영농에 관한 지도
66. 경제작물재배 기술지도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
67. 농업기술, 경영에 관한 상담
68. 과수 고품질 생력재배 기술지도
69. 원예작물 안전저장 출하 및 기술지도
70. 영농현장 기술지원
71. 농업인 개발과제 및 지역특화작물 육성

72.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가부업 기술지도
73. 농촌 부존자원 개발 활용지원 및 관광농업 개발지도
74. 식량증산 업무 추진
75. 종자 자유통 교환 및 정부 보급증 공급
76.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및 농약사용법 지도
77. 농업 환경개선 유관기관 협력 및 대책 수립시행
78. 종묘상 등록 및 지도. 단속
79. 잠업, 특작, 원예, 화훼육성지원
80. 토양검정 및 친환경 농업기술지도
81. 원예작물 시설 현대화 기술지도 및 시범사업 추진
82. 농작물 재해대책
83. 토양개량제 공급 및 농토배양사업 추진
84. 비료판매업 등록 및 지도. 단속
85. 시판 농약상 등록 및 지도. 단속
86. 농기계공급 및 사후관리
87. 지력증진 및 시비 개선지도
88. 농촌지도자회 조직육성
89. 농촌지도자회 연찬회 및 기술정보 교환지도
90. 농촌생활개선회 조직육성 및 연찬회 지도
91. 농촌여성 소득활동 및 건강관리실 운영지도
92. 농촌여성 과제교육 및 기술정보 교환지도
93. 4-H회 조직육성 전반에 관한 사항
94.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95. 농업정책 수립 및 홍보
96. 농로개설 및 용수로 사업
97. 소류지·관개시설물 시설
98. 농림사업 추진
99. 축산 경쟁력제고 사업 추진
100. 사료성분등록 및 사료생산 공장판매업소 지도. 단속
101. 축산단체지도 육성
102. 축산환경개선사업 추진
103. 기타 축산발전 및 별통개선사업 추진
104. 축산 새기술 확대보급과 사양관리 분뇨자원화 기술지도
105. 축산물 가공·운송·보관·판매 등에 관한 인. 허가, 행정관리, 위생검사 및 유통(육

류수급 및 가격안정)

106. 동물약품 도매상 허가 및 동물약사 감시
107. 가축방역 및 공수의 지도, 감독
108. 축산시책사업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109. 가축인공수정소 등록 및 지도·감독
110.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 추진
111. 부화장, 종계장 등록 및 지도·감독
112. 도축장 허가 및 지도·감독
113. 부정축산물 지도·단속
114. 동물병원 개설 등록 및 지도·감독
115. 한·육우 전문판매점 지원
116. 냉장육 판매업소 시설개선사업 추진
117.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 추진
118. 유기동물보호사업
119.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추진에 관한 사항
120.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121.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관한 사항
122. 학교급식 시설 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23.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124. 가축전염병 업무

제30조 앞에 “제6절 안전도시건설국”을 삽입한다.

제3장 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제36조 및 제37조로 한다.

제4장 제1절의 제목 “환경관리사업단”을 “환경수도사업단”으로 한다.

제33조를 제38조로 하며 제38조(중전의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를 “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34조 및 제34조의2를 삭제하고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하부조직)

①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시설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도과장

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환경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2. 환경영향평가, 환경성 검토, 환경분쟁 조정
3. 환경오염 특별대책 지역 내의 토지이용 시설 제한
4.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5. 자연보호 종합계획 수립 시행
6. 자연정화 활동의 주관 및 지도
7. 자연보존물·자연보호 시설물 지정·조성 및 관리
8. 자연보호조직의 육성·관리
9. 자연보호 계도 단속 및 홍보 활동 전개
10. 자연발생 유원지 종합관리 대책 추진
11. 자연정화 및 중역권 수질보존 업무
12. 야생조수보호 업무
13. 민간 환경단체 관리, 지원, 협의 업무
14. 기타 자연보호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5. 수변구역 관리
16. 과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업무
17. 환경백서 발간
18. 지방의제 21 추진에 관한 사항
19. 수렵면허 등에 관한 업무
20. 조수, 포획 승인 등에 관한 업무
21. 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22.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
23. 「영산강·섬진강 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행
24. 영산호,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25.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추진
26. 공중화장실 설치·개보수 및 지도·점검 등 관리 총괄(유달공원·외달도·고하도 공중화장실 제외)
27.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28.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 등록 및 행정처분
29.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30.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신고 및 지도, 감독
31.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32.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33. 분뇨 등 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관리
34. 토양환경보존에 관한 사무
35. 토양측정망 운영관리
36.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 및 행정처분
37.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및 관리
38. 배출시설의 설치, 변경 신고 허가
39.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40.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41.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관리
42. 소음, 진동규제 지역 지정, 규제기준 설정 및 통제
43. 수질, 대기, 소음, 진동 악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44. 기타 수질오염원 지도, 단속에 관한업무
45.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
46.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47. 운행차 확인 검사대행자 등록 및 관리
48. 특정공사 사업장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49. 수질(하천, 호수) 오염행위 지도, 단속 및 오염사고 처리
50. 농경지 오염방지 및 (기름)오염농수산물 폐기
51. 지정 폐기물 운반통제 및 수질오염 물질의 제거명령
52.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점검 및 행정처분
53.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사항
54.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55.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56.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 및 지도, 감독
57.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및 지도 감독
58.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59.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 수립, 시행
60. 전국오염원 조사에 관한 업무
6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관리
62.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6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지도, 점검

64. 친환경상품 구매에 관한 사항
65. 대기오염측정망 관리
66. 저탄소 녹색성장 총괄
67.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관리 및 지원
68.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69.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③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조정
 2. 청소장비 운영계획 및 관리
 3. 환경미화원 임면 및 지도, 감독
 4. 환경미화원 노조 관련 업무 추진
 5. 시가지 청소상태 점검 및 취약지 중점관리
 6. 위반쓰레기 배출 및 무단투기 지도, 단속
 7. 쓰레기종량제 종합계획 수립 시행
 8. 쓰레기종량제 위반자 청문 및 과태료 부과
 9.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판매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 매립 및 소각시설계획 수립 및 관리
 11.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
 12. 폐기물 다량 배출자 신고처리 및 지도·점검
 13.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지도단속, 행정처분
 14. 폐기물 처리업 허가
 15. 폐기물 통계 조사
 16. 폐기물 재활용업소 신고 및 지도 점검
 17. 폐기물 보관용기(물온박스 등) 보급 및 관리
 18. 대형폐기물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19.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20.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21. 건설폐기물 신고
 22. 사업장 폐기물(지정폐기물제외) 처리에 관한 사항
 23. 사업장 폐기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24. 사업장 폐기물 관련 생활민원 처리
 25.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실적보고
 26. 지정폐기물 배출자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27. 지정폐기물에 관한 업무

28. 감염성 폐기물에 관한 업무
 29. 감염성 폐기물 배출자 지도 점검 및 처분
 30.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등 감량화 추진
 31. 음식물 공공처리 시설 설치
 3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및 처분
 33.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운반 수수료 부과 징수
 34.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 업무
 35. 비위생매립지 관리 및 정비사업
 36. 위생 및 비위생매립지 사후 관리
 37.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38. 재활용 수집 등록단체 및 신고업소 지도·관리(고물상)
 39. 재활용품 수집
 40.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41. 재활용품 판매, 세입관리
 42. 재활용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43.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 압축 및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44. 1회용품 감량화 추진
 45. 나눔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환경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통계
 3.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과징
 4. 반입폐기물의 위생적 매립처리
 5. 주변마을 주민 환경위생사업
 6.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건강진단
 7. 매립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8. 매립장에서 발생된 가스의 성분조사 및 처리
 9. 매립장 및 주변마을 방역소독
 10. 매립장내에 발생된 악취제거에 관한 사항
 11. 매립용중장비 및 차량관리
 12. 침출오수의 적정처리 및 우수배제에 관한 사항
 13.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14. 폐기물 매립 후 사후관리
 15. 가압장 관리

16.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자원화시설 운영
17. 각종 부대시설 관리 유지
18. 기타 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19. 환경에너지센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0.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⑤ 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사업 종합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시행
 2. 상수원조성 및 수자원보호 이용에 관한 사항
 3. 상수도공사 설계·시공 감독
 4. 도시계획과 상수도시설 계획의 연결 조정
 5.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관리 유지
 6. 급수계획 수립 및 시행
 7. 급·배수관 시설의 설계·시공과 유지관리
 8. 급·배수관 관망도 종합관리
 9. 급수전의 설계·시공과 유지관리
 10. 급수용구 유지관리(수도계량기 포함)
 11.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도감독
 12. 급수탑, 소화전 기술지원 및 관리
 13. 급수관계에 관한 통제
 14. 급수구역내 구역계량사업 시행 지도·감독
 15. 송수시설의 개량설계 및 감독
 16. 송수유량계 및 누수탐사장비 유지관리
 17. 유수율 향상 종합대책 수립
 18. 계량기 및 대장관리
 19. 상수도 누수탐사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계획과 시행
 20. 급·배수관 통합공사 설계·시공 감독
 21. 누수방지(양·송·배수관) 및 응급개조 공사·시공 감독
 22. 구역개량 유량계 유지관리
 23. 부정(도수)수도 단속 업무
 24. 누수신고 접수처리
 25. 기계, 전기시설의 수리, 조작, 공사설계, 시공감독
 26. 기계, 전기기술 지도감독
 27. 조절지 및 변실 관리
 28. 몽탄정수장 여과기, 중앙제어실라인 관리 운영

29. 몽탄정수장 실험실 관리운영
30. 몽탄정수장 수질 자동 측정장치 운영 및 유지 관리
31. 정수장정수처리시설(응집지, 침전지, 정수지, 회수조)유지 및 청소
32. 정수장 여과지 시설관리
33. 양·정수장 전기, 기계 유지관리
34. 양수·정수장 유출관에서 유입까지 유지관리(옥내 배관시설포함)
35. 자연건조장 유지관리
36. 송수관로 응급복구 등 자재관리
37. 약품실 운영 및 약품 투입관리
38. 염소실 운영 및 염소용지 유지관리
39. 중화장치 및 비상발전기 운영업무
40. 환경배출시설 관리운영
41.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시설관리 조정협의
42. 상수도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43. 기타 수질검사 시험에 관한 사항
44. 수질관리검사 및 시험
45. 수질분석·연수·기술지원 등에 관한사항
46. 수질검사 민원접수 및 수수료 징수
47. 수질검사 성적서 처리 및 발송
48. 수질검사 기기 유지 관리
49. 먹는 물 및 상수도 원수 정수 수질 검사
50. 실험 폐액 처리
51.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52. 달산수원지 시설유지관리
53. 저수조(물탱크)신고, 청소 및 위생상태 등 관리
54. 상수도 통계 조사 및 보고
55.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 관리
56. 구역계량사업지구 유량계장비 유지 관리
57. 먹는물관리법에 관한 사항
58. 상수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59. 상수도사업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60. 상수도사업회계 현금출납 및 금고감독
61. 상수도사업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
62. 상수도사업회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지방채관리

63. 상수도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구매, 기타의 계약
64. 상수도사업 회계 결산, 경영평가 관리
65. 상수도사업 회계 공인관수 및 문서 관리
66. 상수도 공기업회계 행정재산 유지관리
67. 상수도사업 시설용지 취득 및 처분과 용지보상
68. 상수도재산 임대료 부과 및 징수
69. 상수도사업 회계 자재수불 및 보관 유지 관리
70. 상수도사업용 차량관리
71. 상수도사업 회계 은닉재산 색출 및 소유권확보
72. 상수도사업 회계 세입금 관리
73.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74. 상수도 사용료 이의신청 처리
75. 상수도요금 인상 및 조정 관리
76. 시외급수의 검침과 사용료 과징
77. 부정수도 사용자 및 시설 신고(수도계량기 검침원)
78. 급수공사 시공명령
79. 급수전 명의변경
80. 수도계량기 시험의뢰 신청 접수
81. 다량 수도사용수용가 관리
82. 물이용 부담금에 관한 사항
83. 재산의 대부,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84. 재산의 시가조사 및 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

⑥ 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 및 치수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하수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시행
3. 하수도 조사측량 설계 및 시공·감독
4.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5. 하수공구 자재관리
6. 하수도 통계 및 각종자료 수집
7. 하수도 개·보수 및 준설사업 시행
8. 하수도 개수공사계획 수립 및 추진
9. 하수도 준설차 운영
10. 기존하수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11. 공공하수도대장 정리 및 관리

12. 비관리청 하수도 설치 허가
13. 배수시설공사 신청, 공사시행
14.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
15.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16. 준설원 관리에 관한 사항
17. 수자원 이용계획 수립
18. 배수펌프장 설치·개보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9. 해수 침수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0. 하천 관리 및 하천시설물(제방, 수문, 수위 관측시설)의 개보수·유지관리
21.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22. 하천공사의 측량설계 및 공사 감독
23. 하천업무에 관한 일반 행정사항 총괄
24. 하천 등 골재채취 관련업무
25. 침수방지에 관한 사항
26.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하수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8. 하수도사업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29. 하수도사업회계 현금출납 및 금고감독
30. 하수도사업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
31. 하수도사업회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지방채관리
32. 하수도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구매, 기타의 계약
33. 하수도사업 회계 결산, 경영평가 관리
34. 하수도사업 회계 공인관수 및 문서 관리
35. 하수도 공기업회계 행정재산 유지관리
36. 하수도사업 시설용지 취득 및 처분과 용지보상
37. 하수도재산 임대료 부과 및 징수
38. 하수도사업 회계 자재수불 및 보관 유지 관리
39. 하수도사업용 차량관리
40. 하수도사업 회계 은닉재산 색출 및 소유권확보
41. 하수도사업 회계 세입금 관리
42.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43. 하수도 사용료 이의신청 처리
44. 하수도요금 인상 및 조정 관리
45. 재산의 대부,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46. 재산의 시가조사 및 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
47. 하천, 하수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부과 징수

48. 하수도 배출량 조사

49.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4장 제2절(제35조 및 제36조)을 삭제하고 제4장 제3절(제37조 및 제38조)을 제4장 제2절로 하며, 제37조 및 제38조를 각각 제40조 및 제41조로 한다.

제4장제3절(제42조 및 제4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제42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3조(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소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4. 소방시설, 가스시설 관리
5. 하수유입·유출 수질분석 및 시험
6. 하수처리에 따른 공해방지대책 종합계획 수립
7. 하수처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하수처리시설의 유지보수
9. 하수차집관로 및 차집보 유지보수
10. 수목관리 및 식재에 관한 사항
11. 각종 시험기기 운전 및 약품처리 관리
12. 기타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13. 찌꺼기처리시설 운전 및 폐기물 처리
14. 중앙감시처리장치 운전 및 유지관리
15. 중계 펌프장 관리 및 운전
16. 기타 하수처리에 관한 기기 운영 및 보수, 유지 관리
17. 남악하수처리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장 제4절, 제4절의1(제39조, 제39조의1, 제40조, 제40조의1), 제4절의2(제39조의2, 제40조의2), 제4절의3(제39조의3, 제40조의3)을 삭제하고 제4장 제4절(제44조 및 제4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북향수질관리사무소

제44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5조(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청사내 보일러 운전 및 유지관리
3. 소방시설, 가스시설 관리
4. 분뇨의 인수산화 처리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 전기시설의 운영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기계 전기시설의 수선공사, 조사 설계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8. 하수·분뇨처리에 따른 공해방지 대책 종합계획 수립
9. 하수·분뇨유입·유출 수질분석과 시험기기 운영 및 약품처리 관리
10. 하수·분뇨처리 공정 및 수질 관리
11. 하수처리시설의 보수 및 유지 관리
12. 탈수케익 분석 및 관리
13. 오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폐기물처리
14. 중계펌프장 관리 및 운전
15. 처리장 토목(차집관로 등) 전반에 대한 유지 관리
16. 중앙제어시스템 전반에 대한 유지 관리
17. 수목관리 및 식재에 관한 사항

제41조부터 44조까지를 각각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획문화국장**” 을 “**기획관리국장**” 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기획문화국장**” 을 “**기획관리국장**” 으로 한다.

② “목포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기획문화국장**” 을 “**기획관리국장**” 으로 한다.

제7조 중 “**기획문화국장**” 을 “**기획관리국장**”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2항 중 “**기획문화국장**” 을 “**기획관리국장**” 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기획문화국장**” 을 “**기획관리국장**” 으로 한다.

③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관광경제국장**” 을 “**경제산업국장**” 으로, “**기획관리국장**” 을 “**경제산업국장**” 으로 한다.

④ “목포시交通安全대책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문화국장**” 을 “**기획관리국장**” 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관광경제국장**” 을 “**관광문화체육국장**” 으로 한다.

⑤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문화국장**” 을 “**기획관리국장**” 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관광경제국장**” 을 “**경제산업국장**” 으로 한다.

⑥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관광경제국장**” 을 “**경제산업국장**” 으로 한다.

⑦ “목포시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환경관리사업단장**” 을 “**환경수도사업단장**” 으로 한다.

⑧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문화국장**” 을 “**관광문화체육국장**” 으로 한다.

- ⑨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감사실, 기획예산과, 문화예술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과, 교육체육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의회사무국, 보건소,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을 “감사실, 기획예산과, 문화예술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과, 교육체육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의회사무국, 보건소, 문예시설관리과, 체육시설관리과, 목포자연사박물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기업유치실, 관광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 수도과, 하수과, 남해수질관리과, 북항수질관리과”를 “기업유치과, 관광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 수도과, 하수과, 남해수질관리사무소, 북항수질관리사무소”로 한다.

- ⑩ “목포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상하수도사업단”을 “환경수도사업단”으로 한다.

제2조제2호 “관리과(남해수질관리과, 북항수질관리과)”를 “관리소(남해수질관리사무소, 북항수질관리사무소)”로 한다.

- ⑪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문예시설관리사무소”를 “문예시설관리과”로 한다.

- ⑫ “목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상하수도사업단장”을 “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 ⑬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상하수도사업단장”를 “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 ⑭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관광경제수산물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직무) 감사실장·기업유치실장 은 부시장을 과·소·지소장은 국·소·단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조(직무) 감사실장 은 부시장을, ----- ----- ----.
제3조의2(기업유치실) (생략)	<삭제>
제3조의3 (생략)	<삭제>
제2장 제2절 기획문화국	제2장 제2절 기획관리국
제4조(기획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문화예술과장·공보과장 ·세정과장·회계과장 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관리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공보과장·세정과장 ·회계과장 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 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통신 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7. (생략)	1. 시정의 기획조정 2. 시 종합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사업의 타당성 분석 포함) 3. 시정목표 설정과 시책 및 사업 책정 4. 주요 업무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5.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 처리 6. 총리실 훈령 및 지시사항 처리 7. 장관, 도지사 지시사항 처리 8. 시장 지시사항 처리 및 추진결과 확인 9. 주요시정 추진상황 확인 및 자체평가 10. 제안제도 운영 11. 시장 공약사항 처리 12. 시정현황 작성 13.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14. 시정시책 개발 15. 시정운영 성과작성, 2020 목포발전 비전수립 추진 16. 확대간부회의 운영

17. 정책실명제 운영
18. 국책사업 지원
19. 성과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0. 창의학습 연구동아리 운영
21. 시의회 운영 지원 및 의회사무국과의 협조 조정
22. 시의회의 시정 질의 답변서 작성 총괄 및 답변사항 관리
23.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준비 총괄
24. 시의회 동향관리
25. 시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재의 요구
26. 도의회에 관한 사항
27. 상황실 관리 운영
28.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공기업 특별회계 제외)
29. 예산집행 계획 수립, 배정, 관리 업무
30. 교부세 관리
31. 국도비 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32.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및 예비비 사용승인
33.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34.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 운영
35. 지방채무 승인신청 및 지방채무 관리
36. 기금운영계획 종합 총괄 및 관리
37. 투·융자 심사
38. 용역과제 사전심의
39. 경영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
40. 특정사업과 공기업의 경영분석
41. 전시 예산 편성
42.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43. 조례·규칙의 입안 심사 및 공포
44. 훈령, 예규, 질의 등 주요문서의 심사
45. 법령 질의, 해석 조정 통제
46.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
47. 전시 법령의 정비

48. 행정심판 청구에 관한 사항
49. 소송사무 종합 조정
50. 법무민원 상담
51.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52. 고문변호사 운영
53. 그 밖의 법제 및 송무에 관한 사항
54. 거주외국인 각종 법률상담 지원
55. 지역발전계획 종합수립 및 평가
56.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및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 추진
57.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58. 지역특화발전 특구선정 및 지원
59. 균형발전 업무 총괄
60. 지역단위 균형발전 네트워크 구축
61. 지방대학 발전역량 강화사업 관련
업무 추진
62. 지역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63. 공공부문 경영혁신
64. 신활력 지역사업 및 지역전략 산업의
발굴·지원
65.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에 관한 사항
66.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67.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68.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69.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70.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71.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72. 「지방규제 신고고객 보호」 제도 운영
73.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74.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75. 「지방 규제개선위원회」 운영
76. 인·허가부서 대상 특별전문교육 지원
77. 「지방규제정보 지도시스템」 운영
78. 「지방규제 지수」 운영

제5조의2(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9. (생 략)

제6조(공보과) 공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9.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개최
80. 광역행정망 추진
81. 서남권 행정협의회 운영
82. 서남권 공동발전계획 수립·추진
83.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84. 인구유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85. 저출산 인구감소 종합 대책 수립
86. 저출산 지역맞춤형 시책 개발
87.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88. 지역인구 통계 분석 및 진단
89. 중앙-지자체-민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90. 인구정책 조례, 위원회 등 제도적 기반 구축
91.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운영
92. 정부혁신 대응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93. 정부혁신 추진과제 발굴 및 관리
94. 정부혁신 추진체계 구축·운영
95. 정부혁신 교육·홍보 및 성과관리
96. 세무조사·채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97.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98.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99. 지역밀착형 생활SOC 관련 업무
100. 정부 지역발전정책 연계 정책개발
101. 국·도정과제 대응방안 수립 및 세부 실천과제 추진
102. 공모사업 대응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103. 공모사업 예측·분석 및 전략적 활용 방안 개발
104.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지원
105. 적극행정 계획수립 및 추진 총괄

<삭 제>

제6조(공보과) -----
-----.

1. ~ 17. (생 략)

18. SNS 활용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0조(자치행정복지국) 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
정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
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노인장애인
과장·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으로, 민원봉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5. (생 략)

<신 설>

제12조(교육체육과) 교육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3. (생 략)

제13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9. 응급구조 업무

10.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19. SNS(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트위터 등)
목포시 계정 운영

20. SNS 콘텐츠 제작 및 홍보

21. SNS 서포터즈 및 블로그 기자단 관리

22. SNS 활용 교육에 관한 사항

제10조(자치행정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
방시설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
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_____

_____.

1. ~ 115. (현행과 같음)

116. 지방분권 총괄

117. 지역단위 분권 네트워크 구축

118.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119.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관련업무 추진

120.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삭 제>

제12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현행과 같음)

9. <삭 제>

10. (현행과 같음)

11. 재해이재민 수용 및 구호 관리

12. ~ 15. (생 략)

16. 그 밖의 구호에 관한 사항

17. ~ 78. (생 략)

제14조~제16조 (생 략)

<신 설>

제2장 제4절 관광경제국

제17조(관광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해양항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수산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8조(관광과) 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0. (생 략)

<신 설>

11. <삭 제>

12. ~ 15. (현행과 같음)

16. <삭 제>

17.~ 78. (현행과 같음)

제13조~제15조 (현행 제14조부터 16조까지와 같음)

제15조(중전의 제16조)에 제1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8. 주민친절도 등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시행

제2장 제4절 관광문화체육국

제16조(관광문화체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예술과장·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예시설관리과장·체육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7조(관광과) 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0. (현행과 같음)

61. 음식관광 마케팅 및 대표음식 브랜드화 사업 추진

62. 으뜸맛집 선정 및 관리운영

63. 명인·명가 지정 및 관리운영

64. 음식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

65. 음식특화거리 조성

66. 음식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관리

67. 외식업소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

<신 설>

제18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 문화·예술행사 운영(시립예술단체 행사 제외)
3.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지도 육성
4. 문예진흥기금 운영·관리
5.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7.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8. 평화광장 야외무대 유지 관리
9. 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10.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관리
11. 출판사 및 인쇄소 신고, 변경신고 및 관리
12. 공연장 등록·변경·폐업처리·승계사항 처리
13. 공연장 지도·감독
14. 영화상영 신고 수리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16.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17.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18. 거주외국인 각종 문화예술행사 초청 및 참여
19. 거주외국인 지역유적지 답사, 문화체험, 각국 기념일 행사 지원
20. 전시작품 구입 및 수집에 관한 사항
21.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유치, 조성
22. 유달예술타운 운영·관리
23.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24. 목포문화재단 운영지원 및 지도
25. 작은도서관 조성 및 관리지도
26. 어린이도서관 운영 관리
27. 영어도서관 운영 관리
28. 연산완충녹지 야외공연장 사용승인
29.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운영·관리
30.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1. 공예품 개발 및 지원

제19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03. (생 략)

제19조(교육체육과) 교육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분야 지원 및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
2. 초·중·고 우수학생 표창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초·중·고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4.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목포장학재단 지도감독 및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7.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사항
9. 평생교육 발전계획 수립 및 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
10.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11.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2.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4. 평생학습 정보 제공 및 학습 상담에 관한 사항
15. 평생학습 축제 개최에 관한 사항
16. 평생학습 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7. 평생교육 강사풀제 운영에 관한 사항
18.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9. 목포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0. 목포시 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1. 평생교육 기관 동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지원
22. 동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3. 동 주민사랑방 강사, 자원봉사 요원 지원
24. 동 주민사랑방 물품관리 일반사항
25. 동 주민사랑방 운영실적 평가 분석
26. 동 주민사랑방 운영비 등 경상예산 지원
27. 동 주민사랑방 거주외국인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8.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9. 서남권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30. 성인 문해 교육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1.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32. 거주외국인에 대한 사회적응(한글 및 한국어) 교육 지원
33. 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34. 재단법인 체육진흥회업무에 관한 사항
35.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36.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및 지도·육성
37. 생활체육 동호인 지도·육성
38. 각종 생활체육 동호인대회 지원 및 운영·관리
39. 체육회 관련 업무지도
40. 각종 체육행사주관 및 지도·관리
41.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시설 설치
4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상 체육 시설업의 등록신고 등 지도·감독
43. 체육회소속 경기단체 주관 자전거대회 지원 업무
44. 직장체육활동의 지원
45. 직장 체육팀의 지도·육성
46. 직장운동부 운영관리 (하키팀, 육상팀, 축구팀)
47.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48.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49. 스포츠 이벤트 개최
50. 스포츠 마케팅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1. 스포츠관광 홈페이지 구축
52. 스포츠관광 프로그램 발굴
53. 청소년 스포츠클럽 지도·감독
54. 목포축구센터 지도·감독
55. 거주외국인 각종 체육행사 초청 및 참여 지원
56. 기타 체육업무에 관한 사항
57.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기본계획 수립
58.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운영위원회 구성
59.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운영 지원
60.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개최 홍보
61. 전국체전·장애인체전 문화예술행사 추진
62. 목포종합운동장 건립

제19조의2(일자리청년정책과) 일자리청년
정책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 37. (생 략)

제20조(해양항만과) 해양항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8. (생 략)

제20조의2(수산진흥과) 수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8. (생 략)

제21조(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3. 그 밖에 전국체전·장애인체전에 관한 사항

<삭 제>

제20조(문예시설관리과) 문예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방호·방화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2. 입장권(열람권) 등의 발급·검인·검표,
시설물 사용료 징수 등
3. 재산관리·시설물 종합관리 및 개보수 등
영선에 관한 사항
4. 조경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5. 냉난방, 통신, 전기, 기계, 음향, 소방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관리
6. 문화예술전시·공연행사 홍보 및 기록유지
7. 공연계획 및 공연장 대관 사용에 관한 사항
8. 공연물 제작·홍보 및 공연물품 수급에
관한 사항
9. 관람객 안내 및 안전관리
10. 공연장, 연습실, 분장실관리
11. 전시계획 및 전시실 대관 사용에 관한 사항
12. 소장품 관리 및 미술활동의 홍보·보급에
관한 사항
13. 전시 소품, 공연 소품 유지관리
14. 기타 무대운영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5. 시민문화체육센터(공연장, 일반음식
점) 운영에 관한 사항
16. 목포문화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 <삭 제>

제21조(체육시설관리과) 체육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86. (생 략)

<신 설>

1.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청사 방호·방화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사용료 관리
5. 체육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7. 체육시설 운영관리
8. 궁도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부주산 체육시설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0. 각종 기계장비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목포자연사박물관) 목포자연사박물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및 입장권 매·검표 관리
2. 재산관리·청사 시설유지 관리 및 방화·방호에 관한 사항
3. 전시시설 임대에 관한 사항
4. 관람객 안내 및 안전관리
5. 박물관 정보시스템(전산·영상·홈페이지) 운영 관리
6. 박물관에 관한 백서, 간행물의 제작 및 대외홍보 사항
7.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연구회 등 개최
8. 박물관 특별전시 및 기획전시 계획수립 및 시행
9. 박물관 잔디공원, 비파원 및 주차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박물관의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타 박물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2. 소장품의 조사·연구 및 수집, 기증, 기탁에 관한 사항
13. 소장품 관리·전시 및 전산화 등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장품 훈증 및 소독, 복원에 관한 사항
15. 소장품 보존 환경조사 연구 및 지원 사항
16. 자연사에 속하는 지질, 동·식물, 곤충, 해양생물, 조·포유류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7. 자연사 및 향토사 조사 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및 지원
18. 향토문화자료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9. 학술조사 연구 및 연구결과의 보급, 선양에 관한 사항
20.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품 관리
21.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수장고 소장유물 관리
22.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회 개최
23. 목포생활도자박물관 활성화계획 수립·추진
24.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품 수집 및 연구
25. 도자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6. 체험공방 프로그램 운영
27.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전시품 관리
28.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수장고 소장품 관리
29.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정보시스템(전산·영상·홈페이지) 운영 관리
30.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전시회 개최
31.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활성화계획 수립·추진
32. 그 밖의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장 제5절 안전도시건설국

<신 설>

<신 설>

제2장 제5절 경제산업국

제23조(경제산업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지역경제과 장기업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해양항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4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정책 종합 기획·조정 협의
2. 지역경제발전 기본계획 수립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교육
4. 지역경제 동향파악 관리
5. 경기분석 및 지표작성 관리
6. 경제자료 작성 및 관리
7.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경제정책 협의
8. 대규모 점포 등록·지도관리
9. 전남서남부 중소기업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 지도·감독
10. 담배 도·소매업 등록 및 지도·감독
11. 전자상거래 업무 추진
12. 상거래질서 확립(가격표시제)
13. 미터법 통일 지도
14. 계량기 수리검정, 검사 및 부정계량기 단속
15. 계량기 수리업소 지도·감독
16. 물가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 총괄
17. 물가동향의 종합분석 및 조정
18.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19. 공공요금, 관인요금의 관리
20. 소비자 고발처리 및 보호대책 수립
21. 새마을금고의 합병 또는 분할의 승인
22. 지역경제분야 금융지원 업무 및 금융
통화 자료 관리
2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계획
2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징수
25. 「복권 및 복권기금법」 홍보 및 계도
26. 복권위원회 업무협조, 지원
27. 대부업 등록, 변경, 폐업신고
28. 대부업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지도·감독
29. 상표관리(부정경쟁 방지업무)
30. 방문통신판매업 등 신고 수리 및 지도감독
31. 품질표시 상품단속

32. 공산품 품질조사 및 불량공산품 단속
33. 으뜸장인상(제조업) 제도 운영
34. 상정·소상공인 업무
35. 지식기반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36.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기구 설치 운영
37. 첨단(신소재·나노·바이오 등)산업 발굴육성
및 지원
38. 첨단과학연구단지의 조성지원 사업
39.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 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
40. 과학기술정보교류홍보 및 학술활동 지원
41. 과학기술 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42. 대학내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시설
(연구소 및 센터)운영 지원
43.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사업
44.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자문관 활용
사업 지원
45. 기업체 기술지도 종합기획 조정
46. 지역기술 혁신센터(TIC) 지원
47. 정보벤처산업 육성 및 벤처지원센터 운영
48. 지역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추진
49.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 관리
50.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 관리
51. 문화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52. 상공회의소 지원 업무
53. 국가산업단지 및 입주업체 지원
54. 국가산단 투자환경개선 추진
55. 지방산업단지 관리업무 지원
56. 삼진산업단지 분양 및 지도·감독
57. 산정농공단지 분양 및 지도·감독
58. 농공 및 산업단지 시설물 관리 및 유지
관리, 입주계약(변경)
59. 농공 및 산업단지 공장설립 완료 신고
60. 농공 및 산업단지 임대신고 및 분양 신고
61. 산업자원동원 충무계획수립 시행
62. 보세지역 지정에 관한 업무

63. 지역 연구센터(RIC) 사업 육성
64. 노동조합 설립신고 변경·해산 신고
65.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66. 노동조합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
67.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 및 공고
68. 노동조합 과태료 부과·징수
69.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신고수리, 중지명령
70. 노동조합 단체협약체결 신고수리 및 시정명령
71. 노동조합 노동관계의 지원
72. 직장폐쇄의 신고·수리
73. 목포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 및 운영
74. 유망 중소기업 육성·지도
75. 다른 기관 중소기업 자금 지원
76. 중소기업제품 홍보·판매·참가 지원
77. 지방중소기업 육성 종합기획 조정
78. 기업애로사항 지도 및 해결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79. 제조업체 현황조사 및 관리
80. 공장등록증 민원 발급
81. 공장설립 등록 및 사후관리(폐업, 변경 등)
82. 공장의 소유자에 대한 보고·검사 등
83. 조선 관련 산업 지원 및 육성
84. 노동자 참여 세미나, 선진지 견학, 교육 등 지원 및 운영
85. 목포시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
86.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
87. 창업사업계획 승인 협의
88. 창업예비학교 운영
89. 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
90. 신산업 동향 파악 및 신산업 발굴 육성
91. 미래전략산업 업무 종합 기획·조정
92.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 조정·지원
9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시책 발굴 지원
94. 4차 산업혁명 관련 동향 및 정보 파악전파

95.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및 공약 사업 추진
96.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추진
97.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추진
98. 신재생에너지 공동 특화사업 발굴 추진
99. 국제통상진흥시책 개발연구 및 종합 기획 조정
1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원 업무
101.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102. 수출진흥 계획 수립 추진(공산품, 가공 식품, 농수산물)
103. 수출업체 육성·지원 및 유망수출제품의 해외 홍보
104. 수출입 계획·실적 총괄
105. 수출입 정보 및 자료 관리
106. 수출종합상담실 운영
107. 바이어 초청·안내·지원
108. 국제교류 협력증진 시책 연구
109. 국제자치단체간 자매결연 및 친선 우호협력 업무
110. 외국 민간단체와의 교류협력 업무
111. 외국 자치단체간 교류 인사영접 및 안내
112. 외국어 통역·번역 지원
113.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방안 연구
114. 산업통상자원부소관 업무 중 다른 실과에 분장되지 아니한 사항
115. 지방해양수산청(항만관련부서 소관 제외) 업무 협의
116. 투자유치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조정
117. 투자유치 지원제도·시책 및 인센티브 개발
118. 투자 유치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관리 · 자료제공 등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119. 투자유치기업 재정지원제도 운영
120.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
121.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 지원

122. 국내 잠재투자가 발굴 및 DB구축
123. 출향기업 등 국내기업 정보 수집 및 관리
124. 투자유치 프로젝트개발 및 타당성 분석
125. 투자유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26. 잠재투자가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
127. 유치기업 행정지원 및 고충사항 처리
128. 투자유치 원스톱(ONE-STOP)서비스 지원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129.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추진
130.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관련업무 총괄
131. 민간 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업무
132. 민간기업 외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133. 외자유치 업무
134.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지원
135. 외국인 투자가 정보수집 및 관리
136. 외국인 투자기업 고충 처리반 운영
137.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업무
138. 외국인 투자기업 사후관리
139. 외국인 투자지원(FOLLOW-UP) 관리에 관한 사항
140. 해외투자유치 전략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141. 해외투자 시장 분석
142. 해외투자자 초청 상담
143.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해외박람회 참가
144. 해외투자 발굴 및 투자유치단 파견
145. 외자투자·유치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146. 투자유치 전반에 관한 사항
147. 산업단지 입주계약 심사 및 체결
148.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추진
149. 연료수급의 종합계획 수립
150.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 관리
151. 전기설비 사후관리
152. 발전사업 허가 및 수급계약 인가
153. 유류수급 조정
154. 석유류판매업 등록 및 지도(품질관리 등)

<신 설>

감독

155. 석탄가공업 허가 및 지도·감독
156. 에너지관리 소비절약 추진
157. 에너지관리 지정업체 지도·감독
158.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체 지도·감독
159. 열관리 시공협회 위탁업무 지도·감독
160. 가스안전관리 계획 수립
161.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판매, 저장, 제조업, 충전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
16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지도·감독
163.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164.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및 사용시설 사후 관리
165. 가스시설 시공자 지도·감독
166.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 지도·감독
167.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운영·지도·감독
168. 에너지밸리 관련 업무 추진

제25조(기업유치과) 기업유치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대양 및 세라믹 산단 기업유치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2. 대양 및 세라믹 산단 기업유치 One-Stop 서비스 지원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3. 대양 및 세라믹 산단 기업유치 협약체결 및 사후관리
4. 대양 및 세라믹 산단 기업유치 각종 보조금 집행 및 관리
5. 대양 및 세라믹 산단 기업유치 지원시책 및 인센티브 개발
6. 대양일반산업단지 분양계약지원에 관한 업무
7. 세라믹일반산업단지 분양계약지원에 관한 업무
8. 대양 및 세라믹 산단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 및 MOU체결
9. 대양 및 세라믹 산단 기업유치 관련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

10. 대양 및 세라믹 산단 기업유치에 관한 국·내외 투자가 상담
11. 대양 및 세라믹 산단 기업유치 활동 대언론 홍보
12. 대양 및 세라믹 산단 기업유치 관련 동향보고 및 실적관리
13. 대양 및 세라믹 산단 유차기업 상담 및 고충 처리
14. 대양 및 세라믹 산단 기업유치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 등 지원
15. 대양 및 세라믹 산단 기업유치 투자 유치자문관 운영·지원
16. 대양 및 세라믹 산단 기업유치 투자설명회 개최
17. 대양 및 세라믹 산단 외자유치 업무
18. 대양 및 세라믹 산단 잠재투자가 발굴 및 DB구축
19. 대양 및 세라믹 산단 민간 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업무
20. 대양 및 세라믹 산단 민간기업 외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21. 대양 및 세라믹 산단 외자유치 업무 추진
22. 대양 및 세라믹 산단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지원
23. 대양 및 세라믹 산단 외국인 투자기업 사후관리
24. 대양 및 세라믹 산단 외국인 투자지원 (FOLLOW-UP) 관리에 관한 사항
25. 대양 및 세라믹 산단 해외투자자 초청 상담
26. 대양 및 세라믹 산단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해외박람회 참가
27. 대양 및 세라믹 산단 투자유치기업 재정지원제도 운영
28. 신산업(바이오, 드론, 로봇,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기업유치 업무 총괄
29. 산업단지 조성(공사부분) 및 대지조성사업
30. 산업단지 기업유치 기반시설 지원(토지 분할 등)
31. 산업단지 실시계획 인허가 업무
32. 대양산단 금융약정 관련 사항

<신 설>

33. 대양산단 청산관련 사항

34.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취득 및 처분업무

제26조(일자리청년정책과) 일자리청년정책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2. 목포시 일자리 총괄 관리

3. 취업정보센터운영 및 취업알선

4. 일자리창출 우수시군에 대한 업무

5.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업무

6. 고용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업무

7. 일자리안정자금에 관한 업무

8. 협동조합기본법 추진에 관한 사항

9. 일자리지원에 관한 사항

10.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취업알선

11. 청년 직장체험 연수시행

12. 기능경기대회 지원

13. 사회적 기업에 관한 사항

14. 공공직업훈련원 지원 및 협조

15. 고용촉진훈련 업무 전반 (계획수립, 지원,
훈련기관 지도감독)

16.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

17. 무허가 직업안내 행위 등 지도·단속

18.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9. 재정지원사업(지역공동체, 공공근로)에
관한 업무

20.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21.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관한 업무

22. 산학연 연관 사업에 관한 업무

23.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업무

24. 전남 청년 마을로, 내일로 프로젝트 추진

25. 전남 동행 일자리사업 추진

26.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27. 4050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28.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9. 청년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 구축
지원

30. 청년 인력 양성 및 지원

31. 청년 관련 단체 지원 및 관리

32. 청년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 설>

33. 청년취업 및 창업·창직 지원
 34. 청년일자리 신규시책 발굴 및 사업화 추진
 35.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취업컨설팅 지원
- 제27조(해양항만과) 해양항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만개발·정비관련 지원 및 협의
 2. 목포신항내항남항대불항 등 5개항의 특화 개발 사업
 3. 해양개발 기본계획수립
 4.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 추진
 5. 해양오염 사고 수습 및 방제 작업
 6. 해양오염 예방 및 오염행위 지도 단속
 7. 적조 관리 및 피해복구
 8. 해양시설 지도·점검
 9. 바다청소에 관한 사항(바다의 날 행사 등)
 10. 해양오염방제 장비 및 기기 관리
 11. 어촌계 오물소각장 시설 사업
 12. 방치 폐어선 처리, 폐선 처리소 설치 및 사후관리
 13. 어항(어촌정주어항 포함) 개발 및 시설 사용 승인 및 사후 관리
 14. 해양환경보전 및 습지 보전에 관한 사항
 15. 해양개발 민자유치 추진
 16. 해양주제공원 조성(광장공원, 선박박물관, 어촌민속촌, 수족관, 세계해양 영웅 역사관 등)
 17. 해양수산행정협의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등 위원회 관리
 18. 목포신항 배후지역 개발
 19. 물류단지 조성 지원 및 물류창고업 등록
 20. 화물 항로개설 및 취항 관련 업무
 21. 항만 물동량 확보업무 지원 및 협의
 22. 항만 물류관련단체 지원 협력업무
 23. 항만 정보화사업 지원
 24. 항만부지이용 및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25.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
 26. 어민복지회관 건립 사업 추진 및 사후 관리

<신 설>

27. 도서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
 28. 어촌(도서)종합 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
 29. 연안정비관리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0.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운영
 31. 연안관리 정보체제 구축
 3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추진, 변경 및 관리
 33. 공유수면관리 및 점사용 허가
 34. 연안개발 관련 연구 조사
 35. 명예연안관리인 위촉 및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36. 연안체험활동 신고 수리 및 과태료 부과 징수
 37. 연안사고 예방업무
 38. 행정선 운영관리 및 선원 관리감독
 39. 소규모 연륙연도교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40. 도서(섬)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
 41. 양식어장 유료 낚시터 지정 관리
 42.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사업
 43. 낚시어선 어업에 관한 사항
 44. 해양데저시설 관리계획 수립 및 설치 지원 협의
 45. 해상마리너(요트) 시설 설치 추진
 46. 해맑은호 관리 및 요트스쿨 운영, 관련 인력 채용 등
 47. 관광유람선 운항 활성화 지원
 48. 해양레저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49. 섬주민 지원사업 추진
 50. 갯바위 유람선 운항 활성화 지원
 51. 국제 카페리선 취항 지원 업무
- 제28조(수산진흥과) 수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수산진흥 종합기획 조정
 2. 수산물 유통보급 시설 건립 및 수산시설 재해대책 총괄
 3. 수산분야 WTO/DDA/FTA 대응대책
 4. 육상양식 종묘생산 및 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
 5. 특정어구 사용금지 승인
 6. 수산동식물 이식 승인

7. 수산단체 및 어업후계 인력 육성 관리
8. 수산자원 조성사업 및 보존(보호)지역 지정 관리
9.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연근해 어업허가, 신고어획물 운반업 등록)
10. 불법어업 근절대책 추진 및 지도 단속
11.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바다 목장화 조성
12.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및 선원 관리 감독
13. 수산물 생산계획 수립 및 수급종합계획
14. 천일염산업 육성 및 염(함수) 관리
15. 수산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16. 수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및 귀어가 지원사업
17. 어선안전조업 종합대책 수립 및 지도단속
18. 어업질서 확립 자금지원사업 및 사후 관리
19.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20.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21. 어로분쟁 조정 및 어업협정(국제규제)에 관한 사항
22. 내로시설사업 및 추진관리
23.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24. 양식어장, 어장구역, 어장정화 지원·지정 및 관리
25. 어선법위반행위자 처벌 및 과태료 부과
26. 어선 및 어선원 공제 가입제도 지도
27. 어선 피해조사 및 복구
28. 어선등록 관리 및 세력조사
29. 어선 건조·개조 발주허가 및 불법 건·개조 지도 단속
30. 연근해 어업 허가·신고 및 어획물 운반업 등록
31. 어업면허·어업권 관리, 어업피해 보상 및 재결
32. 어구, 수산증양식 사업 추진 및 사후 관리 (피해복구)
33. 소형기선 저인망 정리 사업
34. 거주외국인 어업 관련 종사자 지원

<신 설>

제24조 (생 략)

제25조 ~ 제28조 (생 략)

제29조 [제29조는 제38조4항으로 이동]

35. 수산물 보급 유통시설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36. 수산물 물류표준화(포장용기 등)에 관한 사항
37.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소비 촉진
38. 수산물 수출 및 수입수산물 유통정보 관리
39. 수산물 가공업 등록 및 신고와 업체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40.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및 행정처분
41. 수산물 품질인증 등 브랜드 개발
42. 수산물 생산 이력제 관련 업무
43. 고기능수산물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44. (재)목포수산물유통센터 및 (재)목포수산물지원센터 지도감독 관리
45. 해양수산물융복합벨트 사업추진(국립 김산업연구소 건립, 수산기자재산업육성 클러스터, 수산물수출단지 조성)
46. 국제해양수산물박람회 유치 업무
47. 전남해양수산물과학원, 국립수산기자재진흥원 등 관련 기관 유치
48. 재해보험(어선원재해보상, 어선, 어업인안전보험료 등)

제6절 안전도시건설국

제30조(현행 제24조와 같음)

제31조 ~ 제35조(현행 제25조부터 제28조와 같음)

제29조(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장관리
2. 재래시장 현대화사업(활성화운영위원회 포함) 추진
3. 재래시장 판로촉진 및 홍보지원
4. 재래시장 상인교육
5. 재래시장 빈 점포 활용 촉진
6. 재래시장 공동사업 활성화
7. 재래시장 상거래 현대화 촉진
8. 재래시장 및 원도심권 상품권 발행, 관리
9. 농산물유통 종합계획 수립 추진

10. 농산물 상설직판장 설치, 운영지도
11. 농산물 전시판매장 시설관리, 입주단체관리, 직거래 알선
12. 농산물 포장센터 설치, 지도 관리
13.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추진 및 지도
14. 시 단위 농산물 임시 직판행사 개최(국내)
15.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사후관리 지도
16. 농산물 가공업체 포장 개선사업
17. 농산물 가공업체 원료구입 자금지원
18. 농산물 공판장 건설 및 사후관리 지도
19.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및 지도육성
20. 대도시 백화점 농수산 특산물 판촉행사
21. 농산물원산지 표시 및 단속
22. 농산물 수입개방대책에 관한 사항
2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농지원부 관리(기재사항 변경 등)
24.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25. 농업인 자녀 농과계 학자금 지원
26. 농업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27. 농가 도우미 사업
28.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29. 농정심의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30. 농지개량사업 추진
31. 농지전용 허가(신고), 협의
32. 농지전용의 사후관리
33.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34. 농지불법전용 단속
35. 쌀 소득보전 등 직접지불제 사업
36.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직불사업
37. 양곡수급 계획과 조절
38. 양곡보관 및 수송관리
39. 양곡의 가공 및 조작
40. 양곡수불
41. 양곡 도정업 등록
42. 정부양곡 특별회계 운영
43. 양곡부산물 처리

44. 곡가 동태 조사 및 조절
45. 교환양곡 관리
46. 미곡담보융자 및 양곡예매자금 방출
47. 양곡 사고 처리
48. 양곡관리대행기관 및 양곡가공공장 지도
49. 농업경영인회 육성사업
50. 전업농 육성사업 및 사후관리
51. 농민 신문보급, 농어업인 경영정보 제공
52. 창업 후계농업인 대상자 선정 및 현장지도
53. 여름철 현장영농 교육
54. 새해 영농설계 교육
55. 친환경농업 직접 직불제
56. 농업인 품목별 상설교육
57.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58. 분배농지 및 귀속농지 관리
59.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60.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61. 농촌 PC보내기 지원사업
62. 친환경 농업
63. 친환경 축산 직접지불제 사업
64. 소득작물 개발 및 농산물 수출지도
65. 농업 경영개선 및 협동영농에 관한 지도
66. 경제작물재배 기술지도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
67. 농업기술, 경영에 관한 상담
68. 과수 고품질 생력재배 기술지도
69. 원예작물 안전저장 출하 및 기술지도
70. 영농현장 기술지원
71. 농업인 개발과제 및 지역특화작물 육성
72.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가부업 기술지도
73. 농촌 부존자원 개발 활용지원 및 관광농업 개발지도
74. 식량증산 업무 추진
75. 종자 자율 교환 및 정부 보급증 공급
76.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및 농약사용법 지도
77. 농업 환경개선 유관기관 협력 및 대책

수립시행

78. 종묘상 등록 및 지도. 단속
79. 잠업, 특작, 원예, 화훼육성지원
80. 토양검정 및 친환경 농업기술지도
81. 원예작물 시설 현대화 기술지도 및 시범사업 추진
82. 농작물 재해대책
83. 토양개량제 공급 및 농토배양사업 추진
84. 비료판매업 등록 및 지도. 단속
85. 시판 농약상 등록 및 지도. 단속
86. 농기계공급 및 사후관리
87. 지력증진 및 시비 개선지도
88. 농촌지도자회 조직육성
89. 농촌지도자회 연찬회 및 기술정보 교환지도
90. 농촌생활개선회 조직육성 및 연찬회 지도
91. 농촌여성 소득활동 및 건강관리실 운영지도
92. 농촌여성 과제교육 및 기술정보 교환지도
93. 4-H회 조직육성 전반에 관한 사항
94.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95. 농업정책 수립 및 홍보
96. 농로개설 및 용수로 사업
97. 소류지. 관개시설물 시설
98. 농림사업 추진
99. 축산 경쟁력제고 사업 추진
100. 사료성분등록 및 사료생산 공장판매업소 지도. 단속
101. 축산단체지도 육성
102. 축산환경개선사업 추진
103. 기타 축산발전 및 별통개선사업 추진
104. 축산 새기술 확대보급과 사양관리 분뇨자원화 기술지도
105. 축산물 가공. 운송. 보관. 판매 등에 관한 인. 허가, 행정관리, 위생검사 및 유통(육류수급 및 가격안정)
106. 동물약품 도매상 허가 및 동물약사 감시
107. 가축방역 및 공수의 지도. 감독
108. 축산시책사업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제30조 [본조 삭제<2015.1.12.>]

제4장 제1절 **환경관리사업단**

제33조(단장의 직급) **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4조~제34조의2 (생 략)

<신 설>

109. 가축인공수정소 등록 및 지도, 감독
110.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 추진
111. 부화장, 종계장 등록 및 지도, 감독
112. 도축장 허가 및 지도, 감독
113. 부정축산물 지도, 단속
114. 동물병원 개설 등록 및 지도, 감독
115. 한. 육우 전문판매점 지원
116. 냉장육 판매업소 시설개선사업 추진
117.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 추진
118. 유기동물보호사업
119.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추진에 관한 사항
120.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121.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관한 사항
122. 학교급식 시설 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23.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124. 가축전염병 업무

<삭 제>

제4장 제1절 **환경수도사업단**

제38조(단장의 직급) **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삭 제>

제39조(하부조직) ① 환경보호과장은 지방 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시설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환경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2. 환경영향평가, 환경성 검토, 환경분쟁 조정
3. 환경오염 특별대책 지역 내의 토지이용 시설 제한
4.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5. 자연보호 종합계획 수립 시행
6. 자연정화 활동의 주관 및 지도
7. 자연보존물, 자연보호시설물 지정, 조성 및 관리
8. 자연보호조직의 육성, 관리
9. 자연보호 계도 단속 및 홍보 활동 전개
10. 자연발생 유원지 종합관리 대책 추진
11. 자연정화 및 중역권 수질보존 업무
12. 야생조수보호 업무
13. 민간 환경단체 관리, 지원, 협의 업무
14. 기타 자연보호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5. 수변구역 관리
16. 과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업무
17. 환경백서 발간
18. 지방의제 21 추진에 관한 사항
19. 수렵면허 등에 관한 업무
20. 조수, 포획 승인 등에 관한 업무
21. 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22.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
23. 「영산강, 섬진강 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행
24. 영산호,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25.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추진
26. 공중화장실 설치, 개보수 및 지도, 점검 등 관리 총괄(유달공원, 외달도, 고하도 공중 화장실 제외)
27.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28.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 등록 및 행정처분
29.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30.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신고 및 지도, 감독

31.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32.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33. 분뇨 등 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관리
34. 토양환경보존에 관한 사무
35. 토양측정망 운영관리
36.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 및 행정처분
37.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및 관리
38. 배출시설의 설치, 변경 신고 허가
39.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40.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41.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관리
42. 소음, 진동규제 지역 지정, 규제기준 설정
및 통제
43. 수질, 대기, 소음, 진동 악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44. 기타 수질오염원 지도, 단속에 관한업무
45.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
46.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47. 운행차 확인 검사대행자 등록 및 관리
48. 특정공사 사업장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49. 수질(하천, 호수) 오염행위 지도, 단속
및 오염사고 처리
50. 농경지 오염방지 및 (기름)오염농수산물 폐기
51. 지정 폐기물 운반통제 및 수질오염 물질의
제거명령
52.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점검
및 행정처분
53.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사항
54.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55.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56.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 및
지도, 감독
57.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및 지도 감독
58.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59.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 수립, 시행
60. 전국오염원 조사에 관한 업무
6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관리
62.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6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지도, 점검
64. 친환경상품 구매에 관한 사항
65. 대기오염측정망 관리
66. 저탄소 녹색성장 총괄
67.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관리 및 지원
68.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69.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③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행정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 청소장비 운영계획 및 관리
 3. 환경미화원 임면 및 지도, 감독
 4. 환경미화원 노조 관련 업무 추진
 5. 시가지 청소상태 점검 및 취약지 중점관리
 6. 위반쓰레기 배출 및 무단투기 지도, 단속
 7. 쓰레기종량제 종합계획 수립 시행
 8. 쓰레기종량제 위반자 청문 및 과태료 부과
 9.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 판매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 매립 및 소각시설계획 수립 및 관리
 11.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
 12. 폐기물 다량 배출자 신고처리 및 지도, 점검
 13.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지도단속, 행정처분
 14. 폐기물 처리업 허가
 15. 폐기물 통계 조사
 16. 폐기물 재활용업소 신고 및 지도 점검
 17. 폐기물 보관용기(물온박스 등) 보급 및 관리
 18. 대형폐기물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19.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20.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21. 건설폐기물 신고

22. 사업장 폐기물(지정폐기물제외) 처리에 관한 사항
23. 사업장 폐기물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24. 사업장 폐기물 관련 생활민원 처리
25.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실적보고
26. 지정폐기물 배출자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27. 지정폐기물에 관한 업무
28. 감염성 폐기물에 관한 업무
29. 감염성 폐기물 배출자 지도 점검 및 처분
30.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등 감량화 추진
31. 음식물 공공처리 시설 설치
3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및 처분
33.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운반 수수료 부과 징수
34.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 업무
35. 비위생매립지 관리 및 정비사업
36. 위생 및 비위생매립지 사후 관리
37.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38. 재활용 수집 등록단체 및 신고업소 지도 관리(고물상)
39. 재활용품 수집
40.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41. 재활용품 판매, 세입관리
42. 재활용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43.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 압축 및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44. 1회용품 감량화 추진
45. 나눔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환경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통계
 3.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과징
 4. 반입폐기물의 위생적 매립처리
 5. 주변마을 주민 환경위생사업
 6.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건강진단
 7. 매립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8. 매립장에서 발생한 가스의 성분조사 및 처리
9. 매립장 및 주변마을 방역소독
10. 매립장내에 발생한 악취제거에 관한 사항
11. 매립용중장비 및 차량관리
12. 침출오수의 적정처리 및 우수배제에 관한 사항
13.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14. 폐기물 매립 후 사후관리
15. 가압장 관리
16.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자원화시설 운영
17. 각종 부대시설 관리 유지
18. 기타 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19. 환경에너지센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0.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⑤ 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사업 종합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시행
2. 상수원조성 및 수자원보호 이용에 관한 사항
3. 상수도공사 설계·시공 감독
4. 도시계획과 상수도시설 계획의 연결 조정
5.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관리 유지
6. 급수계획 수립 및 시행
7. 급·배수관 시설의 설계·시공과 유지관리
8. 급·배수관 관망도 종합관리
9. 급수전의 설계·시공과 유지관리
10. 급수용구 유지관리(수도계량기 포함)
11.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도감독
12. 급수탑, 소화전 기술지원 및 관리
13. 급수관계에 관한 통제
14. 급수구역내 구역계량사업 시행 지도·감독
15. 송수시설의 개량설계 및 감독
16. 송수유량계 및 누수탐사장비 유지관리
17. 유수율 향상 종합대책 수립
18. 계량기 및 대장관리
19. 상수도 누수탐사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계획과 시행
20. 급·배수관 통합공사 설계·시공 감독
21. 누수방지(양·송·배수관) 및 응급개조

공사·시공 감독

22. 구역개량 유량계 유지관리
23. 부정(도수)수도 단속 업무
24. 누수신고 접수처리
25. 기계, 전기시설의 수리, 조작, 공사설계, 시공감독
26. 기계, 전기기술 지도감독
27. 조절지 및 변실 관리
28. 몽탄정수장 여과기, 중앙제어실라인 관리 운영
29. 몽탄정수장 실험실 관리운영
30. 몽탄정수장 수질 자동 측정장치 운영 및 유지 관리
31. 정수장정수처리시설(응집지, 침전지, 정수지, 회수조)유지 및 청소
32. 정수장 여과지 시설관리
33. 양·정수장 전기, 기계 유지관리
34. 양수·정수장 유출관에서 유입까지 유지관리(옥내 배관시설포함)
35. 자연건조장 유지관리
36. 송수관로 응급복구 등 자재관리
37. 약품실 운영 및 약품 투입관리
38. 염소실 운영 및 염소용지 유지관리
39. 중화장치 및 비상발전기 운영업무
40. 환경배출시설 관리운영
41.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시설관리 조정협의
42. 상수도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43. 기타 수질검사 시험에 관한 사항
44. 수질관리검사 및 시험
45. 수질분석·연수·기술지원 등에 관한사항
46. 수질검사 민원접수 및 수수료 징수
47. 수질검사 성적서 처리 및 발송
48. 수질검사 기기 유지 관리
49. 먹는 물 및 상수도 원수 정수 수질 검사
50. 실험 폐액 처리
51.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52. 달산수원지 시설유지관리
53. 저수조(물탱크)신고, 청소 및 위생상태 등 관리
54. 상수도 통계 조사 및 보고
55.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 관리
56. 구역계량사업지구 유량계장비 유지 관리
57. 먹는물관리법에 관한 사항
58. 상수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59. 상수도사업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60. 상수도사업회계 현금출납 및 금고감독
61. 상수도사업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
62. 상수도사업회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지방채관리
63. 상수도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구매,
기타의 계약
64. 상수도사업 회계 결산, 경영평가 관리
65. 상수도사업 회계 공인관수 및 문서 관리
66. 상수도 공기업회계 행정재산 유지관리
67. 상수도사업 시설용지 취득 및 처분과 용지보상
68. 상수도재산 임대료 부과 및 징수
69. 상수도사업 회계 자재수불 및 보관
유지 관리
70. 상수도사업용 차량관리
71. 상수도사업 회계 은닉재산 색출 및 소유권확보
72. 상수도사업 회계 세입금 관리
73.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74. 상수도 사용료 이의신청 처리
75. 상수도요금 인상 및 조정 관리
76. 시외급수의 검침과 사용료 과징
77. 부정수도 사용자 및 시설 신고(수도계량기
검침원)
78. 급수공사 시공명령
79. 급수전 명의변경
80. 수도계량기 시험의뢰 신청 접수
81. 다량 수도사용수용가 관리
82. 물이용 부담금에 관한 사항

83. 재산의 대부,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84. 재산의 시가조사 및 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
- ⑥ 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 및 치수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하수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시행
 3. 하수도 조사측량 설계 및 시공·감독
 4.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5. 하수공구 자재관리
 6. 하수도 통계 및 각종자료 수집
 7. 하수도 개·보수 및 준설사업 시행
 8. 하수도 개수공사계획 수립 및 추진
 9. 하수도 준설차 운영
 10. 기존하수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11. 공공하수도대장 정리 및 관리
 12. 비관리청 하수도 설치 허가
 13. 배수시설공사 신청, 공사시행
 14.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
 15.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16. 준설원 관리에 관한 사항
 17. 수자원 이용계획 수립
 18. 배수펌프장 설치·개보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9. 해수 침수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0. 하천 관리 및 하천시설물(제방, 수문, 수위 관측시설)의 개보수·유지관리
 21.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22. 하천공사의 측량설계 및 공사 감독
 23. 하천업무에 관한 일반 행정사항 총괄
 24. 하천 등 골재채취 관련업무
 25. 침수방지에 관한 사항
 26.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하수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8. 하수도사업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29. 하수도사업회계 현금출납 및 금고감독
 30. 하수도사업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

제4장 제2절 상하수도사업단
 제35조(단장의 직급) (생략)
 제36조(하부조직) (생략)
 제4장 제3절 도시발전사업단
 제37조~제38조 (생략)
 <신설>
 <신설>
 <신설>

31. 하수도사업회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지방채관리
 32. 하수도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구매, 기타의 계약
 33. 하수도사업 회계 결산, 경영평가 관리
 34. 하수도사업 회계 공인관수 및 문서 관리
 35. 하수도 공기업회계 행정재산 유지관리
 36. 하수도사업 시설용지 취득 및 처분과 용지보상
 37. 하수도재산 임대료 부과 및 징수
 38. 하수도사업 회계 자재수불 및 보관 유지 관리
 39. 하수도사업용 차량관리
 40. 하수도사업 회계 은닉재산 색출 및 소유권확보
 41. 하수도사업 회계 세입금 관리
 42.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43. 하수도 사용료 이의신청 처리
 44. 하수도요금 인상 및 조정 관리
 45. 재산의 대부,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46. 재산의 시가조사 및 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
 47. 하천, 하수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부과 징수
 48. 하수도 배출량 조사
 49.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삭제>
 <삭제>
 <삭제>
- 제4장 제2절 도시발전사업단
 제40조~제41조(현행 제37조부터 제38조까지와 같음)
 제4장 제3절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제42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3조(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소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4. 소방시설, 가스시설 관리

제4장 제4절의1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제39조의1(소장의 직급) (생략)

제40조의1(분장사무) (생략)

제4장 제4절의2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제39조의2(소장의 직급) (생략)

제40조의2(분장사무) (생략)

제4장 제4절의3 목포자연사박물관

제39조의3(관장의 직급) (생략)

제40조의3(분장사무) (생략)

<신설>

<신설>

5. 하수유입·유출 수질분석 및 시험
6. 하수처리에 따른 공해방지대책 종합 계획 수립
7. 하수처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하수처리시설의 유지보수
9. 하수차집관로 및 차집보 유지보수
10. 수목관리 및 식재에 관한 사항
11. 각 운전종 시험기기 및 약품처리 관리
12. 기타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13. 찌꺼기처리시설 운전 및 폐기물 처리
14. 중앙감시처리장치 운전 및 유지관리
15. 중계 펌프장 관리 및 운전
16. 기타 하수처리에 관한 기기 운영 및 보수, 유지 관리
17. 남악하수처리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제4장 제4절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제44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5조(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청사내 보일러 운전 및 유지관리
3. 소방시설, 가스시설 관리
4. 분뇨의 인수산화 처리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 전기시설의 운영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기계 전기시설의 수선공사, 조사 설계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제41조~제44조 (생략)	8. 하수·분뇨처리에 따른 공해방지 대책 종합계획 수립 9. 하수·분뇨유입·유출 수질분석과 시험기기 운영 및 약품처리 관리 10. 하수·분뇨처리 공정 및 수질 관리 11. 하수처리시설의 보수 및 유지 관리 12. 탈수케익 분석 및 관리 13. 오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폐기물처리 14. 중계펌프장 관리 및 운전 15. 처리장 토목(차집관로 등) 전반에 대한 유지 관리 16. 중앙제어시스템 전반에 대한 유지 관리 17. 수목관리 및 식재에 관한 사항 제46조~제49조(현행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와 같음)
----------------	--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 계 법 령	내 용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 국장의 직급과 본청의 실·과·단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2.31, 2011.6.20, 2014.5.12>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단·소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2.3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19-1691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민선7기 시정 역점사업 추진 강화 및 신규행정 수요에 선제적·효율적 대응을 위한 ‘19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맞추어 정원관리기관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각각 조정하고,
- 직급별·직렬별 불균형 해소, 정·현원 불부합 조정, 불합리한 복수직렬 조정 등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동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내역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현 행	1,259	<u>550</u>	<u>23</u>	<u>98</u>	<u>321</u>	<u>267</u>
개 정	1,259	<u>609</u>	<u>23</u>	<u>97</u>	<u>263</u>	<u>267</u>
증 감	-	<u>⊕59</u>	-	<u>△1</u>	<u>△58</u>	-

나.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

《일 반 직》※ 정무직(1), 연구직(17), 지도직(3)은 변동없음

구 분	계	3.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행	1,238	10	68	<u>247</u>	<u>331</u>	<u>338</u>	<u>244</u>
개 정	1,238	10	68	<u>248</u>	<u>327</u>	<u>340</u>	<u>245</u>
증 감	-	-	-	<u>⊕1</u>	<u>△4</u>	<u>⊕2</u>	<u>⊕1</u>

다. 직렬별 정원 조정 내역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합 계		-	⊕59	-	△1	△58	-
4급	소 계	-	⊕1	-	-	△1	-
	행정		⊕1			△1	
5급	소 계	-	⊕3	-	-	△3	-
	행정+시설	-	⊕2	-	-	△2	-
	행정+학예연구관	-	⊕1	-	-	△1	-
6급	소 계	⊕1	⊕12			△11	
	행정+시설	-	⊕6	-	-	△6	-
	행정+공업+시설	△1	-	-	-	△1	-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	⊕1	-	-	△1	-
	행정+학예연구사	-	⊕2	-	-	△2	-
	방 호	-	⊕1	-	-	△1	-
	행정+전산	⊕1	⊕1	-	-	-	-
	사무운영	⊕1	⊕1	-	-	-	-
7급	소 계	△4	⊕8	-	△1	△11	
	행 정	-	⊕2	-	-	△2	-
	공 업	-	⊕3	-	-	△3	-
	행정+학예연구사	-	⊕1	-	-	△1	-
	전 산	-	⊕1	-	-	△1	-
	보 건	-	⊕1	-	△1	-	-
	열관리운영	-	⊕1	-	-	△1	-
	건축운영	-	⊕1	-	-	△1	-
	전기운영	-	⊕1	-	-	△1	-
	사무운영	△4	△3	-	-	△1	-
8급	소 계	⊕2	⊕16	-	-	△14	-
	방송통신	-	⊕2	-	-	△2	-
	방 호	-	⊕1	-	-	△1	-
	행 정	⊕1	⊕3	-	-	△2	-
	공 업	-	⊕3	-	-	△3	-
	시 설	-	⊕3	-	-	△3	-
	위 생	-	⊕1	-	-	△1	-
	녹 지	⊕1	-	-	-	⊕1	-
	기계운영	-	⊕1	-	-	△1	-
	전기운영	-	⊕1	-	-	△1	-

	열관리운영	-	⊕1	-	-	△1	-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9급	소 계	⊕1	⊕13	-	-	△12	-
	공 업	-	⊕5	-	-	△5	-
	방 호	-	⊕2	-	-	△2	-
	운 전	⊕1	⊕3	-	-	△2	-
	방송통신	⊕2	⊕1	-	-	⊕1	-
	전 산	⊕1	⊕1	-	-	-	-
	행 정	-	⊕1	-	-	△1	-
	기계운영	-	⊕2	-	-	△2	-
	전기운영	△1	-	-	-	△1	-
	사무운영	△2	△2	-	-	-	-
	학예연구사	-	⊕6	-	-	△6	-

3. 개정 규칙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조표 : 별첨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제30조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제5조

6. 입법예고 : 2019. 12. 6. ~ 12. 10.(4일간)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적은 행정조직내 부 인력 조정 사항이며, 조직개편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 축소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 『목포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 입법 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7. 규제심사(심의) 대상여부 검토 : 해당없음

8.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사항없음

9. 예산사항

구 분	증감인원	소요비용 내역 (원)			비고
		인원	1인당 보수액	총 금액	
계				1,175,260	
6급	1	1	76,456,190	76,459,190	20호봉
7급	△4	△4	49,760,150	199,040,600	5호봉
8급	2	2	41,866,780	83,733,560	3호봉
9급	1	1	37,675,590	37,675,590	1호봉

※ 비용소요 추계서 참고

10.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 목포시청(자치행정과)]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3439, FAX 270-87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소요 추계서 (1)

1. 관련 법규명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기 구 : 변동 없음
- 정원 및 비용 증감내역

구 분	증감인원		소요비용 내역 (원)			비고
	계	9급	인원	1인당 보수액	총 금액	
증원	1	1	1	37,675,590	37,675,590	1호봉

3. 비용 소요 내역

(9급 1호봉 기준)

구 분	소요비용(원)	산 출 근 거	비고
총 계	37,675,590		
○ 인건비	27,586,090		
- 기본급	19,108,800	1,592,400원*12월	
- 수당	8,477,290		
• 정액급식비	1,560,000	130,000원*12월	
• 명절휴가비	1,910,880	1,592,400원*60%*2회	
• 연가보상비	912,976	1,592,400원*86%*1/30*20일	
• 시간외수당	4,093,440	8,528원*40시간*12월	
○ 직급보조비	1,740,000	145,000원*12월	
○ 이전경비	8,349,500		
- 성과상여금	2,376,440	2,160,400원*110%	
- 연금부담금 등	4,861,93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15.3361%	
- 국민건강보험금	1,023,99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3.23%	
- 장기요양보험금	87,140	(건강보험금*8.51%)	

4. 작성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장 강 명 원

비용소요 추계서 (2)

1. 관련 법규명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기 구 : 변동 없음
- 정원 및 비용 증감내역

구 분	증감인원		소요비용 내역 (원)			비고
	계	8급	인원	1인당 보수액	총 금액	
증원	2	2	2	41,866,780	83,733,560	3호봉

3. 비용 소요 내역

(8급 3호봉 기준)

구 분	소요비용(원)	산 출 근 거	비고
총 계	41,866,780		
○ 인건비	30,694,380		
- 기본급	21,438,000	1,786,500원*12월	
- 수당	9,256,380		
• 정액급식비	1,560,000	130,000원*12월	
• 명절휴가비	2,143,800	1,786,500원*60%*2회	
• 연가보상비	1,024,260	1,786,500원*86%*1/30*20일	
• 시간외수당	4,528,320	9,434원*40시간*12월	
○ 직급보조비	1,740,000	145,000원*12월	
○ 이전경비	9,432,400		
- 성과상여금	2,794,880	2,540,800원*110%	
- 연금부담금 등	5,402,79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15.3361%	
- 국민건강보험금	1,137,90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3.23%	
- 장기요양보험금	96,830	(건강보험금*8.51%)	

4. 작성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장 강 명 원

비용소요 추계서 (3)

1. 관련 법규명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기 구 : 변동 없음
- 정원 및 비용 증감내역

구 분	증감인원		소요비용 내역 (원)			비고
	계	7급	인원	1인당 보수액	총 금액	
증원	△4	△4	△4	49,760,150	△199,040,600	5호봉

3. 비용 소요 내역

(7급 5호봉 기준)

구 분	소요비용(원)	산 출 근 거	비고
총 계	49,760,150		
○ 인건비	36,646,750		
- 기본급	26,174,400	2,181,200원*12월	
- 수당	10,472,310		
• 정액급식비	1,560,000	130,000원*12월	
• 명절휴가비	2,617,440	2,181,200원*60%*2회	
• 연가보상비	1,250,550	2,181,200원*86%*1/30*20일	
• 시간외수당	5,044,320	10,509원*40시간*12월	
○ 직급보조비	1,860,000	155,000원*12월	
○ 이전경비	11,253,400		
- 성과상여금	3,364,460	3,058,600원*110%	
- 연금부담금 등	6,421,41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15.3361%	
- 국민건강보험금	1,352,44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3.23%	
- 장기요양보험금	115,090	(건강보험금*8.51%)	

4. 작성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장 강 명 원

비용소요 추계서 (4)

1. 관련 법규명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기 구 : 변동없음
- 정원 및 비용 증감내역

구 분	증감인원		소요비용 내역 (원)			비고
	계	6급	인원	1인당 보수액	총 금액	
증원	1	1	1	76,456,190	76,456,190	20호봉

3. 비용 소요 내역

(6급 20호봉 기준)

구 분	소요비용(원)	산 출 근 거	비고
총 계	76,456,190		
○ 인건비	58,397,640		
- 기본급	44,654,400	3,721,200원*12월	
- 수당	13,743,240		
• 정액급식비	1,560,000	130,000원*12월	
• 명절휴가비	4,465,440	3,721,200원*60%*2회	
• 연가보상비	2,133,480	3,721,200원*86%*1/30*20일	
• 시간외수당	5,584,320	11,634원*40시간*12월	
○ 직급보조비	1,980,000	165,000원*12월	
○ 이전경비	16,078,550		
- 성과상여금	3,957,250	3,597,500원*110%	
- 연금부담금 등	9,866,46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15.3361%	
- 국민건강보험금	2,078,010	(인건비+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3.23%	
- 장기요양보험금	176,830	(건강보험금*8.51%)	

4. 작성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장 강 명 원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 정 >

[별표 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총 계		<u>1,259</u>	<u>609</u>	23	<u>97</u>	<u>263</u>	<u>267</u>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u>1,238</u>	<u>597</u>	23	<u>97</u>	<u>254</u>	<u>267</u>
	3급	1	1				
	4급	9	<u>5</u>	1	1	<u>2</u>	
	5급	68	<u>28</u>	3	3	<u>11</u>	23
	6급	<u>248</u>	<u>133</u>	4	13	<u>51</u>	47
	7급	<u>327</u>	<u>180</u>	7	<u>13</u>	<u>76</u>	51
	8급	<u>340</u>	<u>134</u>	8	54	<u>66</u>	78
	9급	<u>245</u>	<u>116</u>	0	13	<u>48</u>	68
연구직	계	<u>17</u>	<u>9</u>			<u>8</u>	
	연구관						
	연구사	<u>17</u>	<u>9</u>			<u>8</u>	
지도직	계	<u>3</u>	<u>2</u>			<u>1</u>	
	지도관						
	지도사	<u>3</u>	2			1	

< 개 정 >

[별표 2]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계			<u>1,259</u>	<u>609</u>	23	<u>97</u>	<u>263</u>	<u>267(12)</u>
정무직		합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일반직 합계	<u>1,238</u>	<u>597</u>	23	<u>97</u>	<u>254</u>	<u>267(12)</u>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9	<u>5</u>	1	1	<u>2</u>	
		행정	3	<u>3</u>				
		기술	1			1		
		행정+기술	5	2	1		2	
	5급	소계	68	<u>28</u>	3	3	<u>11</u>	23
		행 정	19	7	1		0	11
		시 설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환경	1	0			1	
		<u>행정+시설</u>	16	<u>10</u>	1		<u>2</u>	3
		<u>행정+학예연구관</u>	1	<u>1</u>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4	2			2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시설+해양수산	2	2				
		행정+환경+시설	2	0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보건+간호	1			1		
		공업+보건+환경	1				1	
		공업+환경+시설	1				1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녹지+시설+농촌지도관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직종별	직급	직렬별	기관별	합계	본청	인화 사무국	직속	사업소	동
일반직	6급	소계		248	133	4	13	51	47
		행 정		59	30	3		4	22
		세 무		6	6				
		사회복지		8	3				5
		방 호		1	1				
		공 업		2				2	
		해양수산		2	2				
		보 건		1			1		
		시 설		3	1			2	
		행정+세무		5	3			1	1
		행정+사회복지		22	10				12
		행정+전산		8	7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환경		5				5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보건		3			3		
		행정+공업		8	5			3	
		행정+시설		47	32			15	
		행정+학예연구사		2	2				
		행정+농촌지도사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3				3	
		공업+환경연구사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5			2		3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2					2
		행정+사회복지+수의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5	5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행정+공업+시설		6	6				
		행정+공업+학예연구사		1	1				
		행정+녹지+시설		3				3	
		행정+해양수산+시설		3	3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학예연구사		1	1				
		행정+시설+녹지+농촌지도사		1				1	
		공업+보건+환경연구사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의료기술+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환경+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사		2	2				
		공업+수의+환경+환경연구사		1				1	
		유 전		3	2			1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				1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1	1				
일반직	7급	소계	327	180	7	13	76	51
		행 정	111	57	6		18	30
		세 무	23	22			1	
		사회복지	32	14				18
		전 산	6	6				
		방 호	1				1	
		공 업	32	15			17	
		농 업	1	1				
		녹 지	3				3	
		해양수산	5	5				
		보 건	1	1				
		의료기술	1			1		
		간 호	1			1		
		환 경	4				4	
		시 설	25	17			8	
		방송통신	3	3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7	4				3
		행정+전산	3	3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5	1			4	
		행정+시설	4	3			1	
		행정+학예연구사	1	1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시설	1				1	
		공업+환경	1				1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간호	6	1		5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시설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운 전	15	6	1		8	
		위 생	2	1			1	
		토목운영	1				1	
		건축운영	2	2				
		전기운영	3	1			2	
		기계운영	5	1			4	
		열관리운영	1	1				
		사무운영	2	2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반직	8급	소계	340	134	8	54	66	78
		행 정	94	46	1		16	31
		세 무	10	9			1	
		사회복지	45	11				34
		숙 기	3		3			
		전 산	2	1	1			
		공 업	14	5		1	8	
		농 업	2	2				
		녹 지	5				5	
		해양수산	4	4				
		보 건	5			5		
		식품위생	2			2		
		의료기술	5			5		
		간 호	33	1		32		
		환 경	1				1	
		시 설	28	20			8	
		방송통신	3	3				
		행정+사회복지+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3					13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1				1	
		행정+농업	2	2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6	5			1	
		행정+방재안전	1	1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4				4	
		공업+시설	1				1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간호	3			3		
		의료기술+간호	2			2		
		시설+방재안전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전산+방송통신+시설	1	1				
		사회복지+간호	1			1		
		방 호	1	1				
		운 전	14	6	1		7	
		위 생	1	1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6	2			4	
		기계운영	7	1			6	
		열관리운영	1	1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4	1	1		2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반직	9급	소계	<u>245</u>	<u>116</u>	0	13	<u>48</u>	68(12)
		<u>행 정</u>	61	<u>33</u>			<u>6</u>	22(12)
		세 무	5	5				
		<u>전 산</u>	<u>3</u>	<u>3</u>				
		사회복지	63	22		3		38
		<u>공 업</u>	16	<u>7</u>			<u>9</u>	
		농 업	1	1				
		녹 지	3				3	
		해양수산	1	1				
		보 건	6			6		
		환 경	3				3	
		시 설	18	14			4	
		<u>방송통신</u>	<u>3</u>	<u>3</u>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전산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4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u>방 호</u>	2	<u>2</u>				
		<u>운 전</u>	<u>21</u>	<u>9</u>		3	<u>9</u>	
		시설관리	2	1			1	
		건축운영	1				1	
		전화상담운영	2	2				
		<u>전기운영</u>	<u>1</u>				<u>1</u>	
		<u>기계운영</u>	10	<u>3</u>			<u>7</u>	
		화공운영	1				1	
		<u>사무운영</u>	<u>8</u>	<u>4</u>			1	3
연구직		연구사합계	17	<u>9</u>			<u>8</u>	
		<u>학예연구사</u>	11	<u>8</u>			<u>3</u>	
		환경연구사	5				5	
		기록연구사	1	1				
지도직		지도사합계	3	2			1	
		농촌지도사	3	2			1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입

신·구조문 대비표(별표1)

현행								개정안							
〔별표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별표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총 계		1,259	550	23	98	321	267	총 계		1,259	609	23	97	263	267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238	544	23	98	306	267	일반직	계	1,238	597	23	97	254	267
	3급	1	1						3급	1	1				
	4급	9	4	1	1	3			4급	9	5	1	1	2	
	5급	68	25	3	3	14	23		5급	68	28	3	3	11	23
	6급	247	121	4	13	62	47		6급	248	133	4	13	51	47
	7급	331	172	7	14	87	51		7급	327	180	7	13	76	51
	8급	338	118	8	54	80	78		8급	340	134	8	54	66	78
	9급	244	103	0	13	60	68		9급	245	116	0	13	48	68
연구직	계	17	3			14		연구직	계	17	9			8	
	연구관								연구관						
	연구사	17	3			14			연구사	17	9			8	
지도직	계	3	2			1		지도직	계	3	2			1	
	지도관								지도관						
	지도사	3	2			1			지도사	3	2			1	

신·구조문 대비표(별표2)

현행							개정안						
〔별표2〕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별표2〕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계	1,259	550	23	98	321	267 (12)	총계	1,259	609	23	97	263	267 (12)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238	544	23	98	306	267 (12)	일반직 계	1,238	597	23	97	254	267 (12)
3급 소계	1	1					3급 소계	1	1				
행 정	1	1					행 정	1	1				
4급 소계	9	4	1	1	3		4급 소계	9	5	1	1	2	
행 정	3	2			1		행 정	3	3				
기 술	1			1			기 술	1			1		
행정+기술	5	2	1		2		행정+기술	5	2	1		2	
5급 소계	68	25	3	3	14	23	5급 소계	68	28	3	3	11	23
행 정	19	7	1		0	11	행 정	19	7	1		0	11
시 설	1	1					시 설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공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환경	1	0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16	8	1		4	3	행정+시설	16	10	1		2	3
행정+학예연구관	1				1		행정+학예연구관	1	1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4	2			2		행정+공업+시설	4	2			2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녹지	1					1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행정+시설+해양수산	2	2					행정+시설+해양수산	2	2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간호	1			1		
공업+보건+환경	1				1		공업+보건+환경	1				1	
공업+환경+시설	1				1		공업+환경+시설	1				1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녹지+시설+농촌지도관	1				1		행정+녹지+시설+농촌지도관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보건+약무+간호	1			1			행정+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6급 소계	247	121	4	13	62	47	6급 소계	248	133	4	13	51	47
행 정	59	30	3		4	22	행 정	59	30	3		4	22
세 무	6	6					세 무	6	6				
사회복지	8	3				5	사회복지	8	3				5
방 호	1				1		<u>방 호</u>	1	<u>1</u>				
공 업	2				2		공 업	2				2	
해양수산	2	2					해양수산	2	2				
보 건	1			1			보 건	1			1		
시 설	3	1			2		시 설	3	1			2	
행정+세무	5	3			1	1	행정+세무	5	3			1	1
행정+사회복지	22	10				12	행정+사회복지	22	10				12
행정+전산	7	6	1				<u>행정+전산</u>	<u>8</u>	<u>7</u>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환경	5				5		행정+환경	5				5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보건	3			3			행정+보건	3			3		
행정+공업	8	5			3		행정+공업	8	5			3	
행정+시설	46	25			21		<u>행정+시설</u>	<u>47</u>	<u>32</u>			<u>15</u>	
행정+학예연구사	2				2		<u>행정+학예연구사</u>	2	<u>2</u>				
행정+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촌지도사	1					1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공업+환경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3				3		공업+시설	3				3	
공업+환경연구 사	1				1		공업+환경연구 사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약무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5			2		3	보건+간호	5			2		3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전산+사회 복지	2					2	행정+전산+사회 복지	2					2
행정+사회복지+ 수의	1					1	행정+사회복지+ 수의	1					1
행정+사회복지+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5	5					행정+전산+시설	5	5				
행정+전산+방송 통신	2	2					행정+전산+방송 통신	2	2				
행정+공업+시설	8	7			1		행정+공업+시설	6	6				
행정+공업+학예 연구사	1	1			0		행정+공업+학예 연구사	1	1				
행정+녹지+시설	3				3		행정+녹지+시설	3				3	
행정+해양수산+ 시설	3	3					행정+해양수산+ 시설	3	3				
행정+보건+식품 위생	1			1			행정+보건+식품 위생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환경	1	0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학예 연구사	1	1					행정+시설+학예 연구사	1	1				
행정+시설+녹지 +농촌지도사	1				1		행정+시설+녹지 +농촌지도사	1				1	
공업+보건+환경 연구사	1				1		공업+보건+환경 연구사	1				1	
보건+의료기술+ 간호	1			1			보건+의료기술+ 간호	1			1		
의료기술+약무+ 간호	1			1			의료기술+약무+ 간호	1			1		
보건+의료기술+ 약무	1			1			보건+의료기술+ 약무	1			1		
행정+공업+시설 +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방송통신	1	1				
행정+농업+환경 +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환경 +농촌지도사	1	1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행정+농업+수의 +농촌지도사	2	2					행정+농업+수의 +농촌지도사	2	2				
공업+수의+환경 +환경연구사	1				1		공업+수의+환경 +환경연구사	1				1	
운 전	3	2			1		운 전	3	2			1	
건축운영	1	1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2				2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				1		기계운영	1				1	
전기운영+기계 운영	1				1		전기운영+기계 운영	1				1	
사무운영	1	1					사무운영	1	1				
7급 소계	331	172	7	14	87	51	7급 소계	327	180	7	13	76	51
행 정	111	55	6		20	30	행 정	111	57	6		18	30
세 무	23	22			1		세 무	23	22			1	
사회복지	32	14				18	사회복지	32	14				18
전 산	6	5			1		전 산	6	6				
방 호	1				1		방 호	1				1	
공 업	32	12			20		공 업	32	15			17	
농 업	1	1					농 업	1	1				
녹 지	3				3		녹 지	3				3	
수 의	0	0					해양수산	5	5				
해양수산	5	5					보 건	1	1				
보 건	1			1			의료기술	1			1		
의료기술	1			1			간 호	1			1		
간 호	1			1			환 경	4				4	
환 경	4	0			4		시 설	25	17			8	
시 설	25	17			8		방송통신	3	3				
방송통신	3	3					행정+세무	3	3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7	4				3
행정+사회복지	7	4				3	행정+전산	3	3				
행정+전산	3	3					행정+공업	3	3				
행정+공업	3	3			0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행정+농업	1	1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녹지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5	1			4		행정+환경	5	1			4	
행정+시설	4	3			1		행정+시설	4	3			1	
행정+학예연구사	1				1		행정+학예연구사	1	1				
전산+방송통신	2	2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시설	1				1		공업+시설	1				1	
공업+환경	1	0			1		공업+환경	1				1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간호	6	1		5			보건+간호	6	1		5		
의료기술+간호	1			1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윤 전	15	6	1		8		윤 전	15	6	1		8	
위 생	1	1			1		위 생	1	1			1	
토목운영	1				1		토목운영	1				1	
건축운영	2	1			1		건축운영	2	2			1	
전기운영	3				3		전기운영	3	1			2	
기계운영	5	1			4		기계운영	5	1			4	
열관리운영	1				1		열관리운영	1	1				
사무운영	6	5			1		사무운영	2	2				
8급 소계	338	118	8	54	80	78	8급 소계	340	134	8	54	66	78
행 정	93	43	1		18	31	행 정	94	46	1		16	31
세 무	10	9			1		세 무	10	9			1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사회복지	45	11				34	사회복지	45	11				34
속 기	3		3				속 기	3		3			
전 산	2	1	1				전 산	2	1	1			
공 업	14	2		1	11		공 업	14	5		1	8	
농 업	2	2					농 업	2	2				
녹 지	4				4		녹 지	5				5	
해양수산	4	4					해양수산	4	4				
보 건	5			5			보 건	5			5		
식품위생	2			2			식품위생	2			2		
의료기술	5			5			의료기술	5			5		
간 호	33	1		32		0	간 호	33	1		32		
환 경	1	0			1		환 경	1				1	
시 설	28	17			11		시 설	28	20			8	
방송통신	3	1			2		방송통신	3	3				
행정+사회복지 +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3					13	행정+사회복지	13					13
행정+세무	2	2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1				1		행정+전산	1				1	
행정+농업	2	2					행정+농업	2	2				
행정+공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6	5			1		행정+시설	6	5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방재안전	1	1				
전산+방송통신	1	1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4				4		공업+환경	4				4	
공업+시설	1				1		공업+시설	1				1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간호	3			3			보건+간호	3			3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의료기술+간호	2			2			의료기술+간호	2			2		
시설+방재안전	1	1					시설+방재안전	1	1				
행정+해양수산 +시설	1	1					행정+해양수산 +시설	1	1				
전산+방송통신 +시설	1	1					전산+방송통신 +시설	1	1				
사회복지+간호	1			1			사회복지+간호	1			1		
방 호	1				1		<u>방 호</u>	1	<u>1</u>				
<u>운 전</u>	<u>14</u>	6	1		<u>7</u>		운 전	14	6	1		7	
위 생	1				1		<u>위 생</u>	1	<u>1</u>				
건축운영	1	1			0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6	1			5		<u>전기운영</u>	6	<u>2</u>			<u>4</u>	
기계운영	7				7		<u>기계운영</u>	7	<u>1</u>			<u>6</u>	
열관리운영	1				1		<u>열관리운영</u>	1	<u>1</u>				
화공운영	1				1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4	1	1		2		사무운영	4	1	1		2	
9급 소계	<u>244</u>	<u>103</u>	0	<u>13</u>	<u>60</u>	<u>68(12)</u>	9급 소계	<u>245</u>	<u>116</u>	0	13	<u>48</u>	<u>68(12)</u>
<u>행 정</u>	<u>61</u>	<u>32</u>			7	<u>22(12)</u>	<u>행 정</u>	61	<u>33</u>			<u>6</u>	22(12)
<u>세 무</u>	<u>5</u>	<u>5</u>					세 무	5	5				
<u>전 산</u>	<u>2</u>	<u>2</u>					<u>전 산</u>	<u>3</u>	<u>3</u>				
<u>사회복지</u>	<u>63</u>	<u>22</u>		3		<u>38</u>	사회복지	63	22		3		38
공 업	16	3			13		<u>공 업</u>	16	<u>7</u>			<u>9</u>	
농 업	1	1					농 업	1	1				
녹 지	3				3		녹 지	3				3	
해양수산	1	1					해양수산	1	1				
<u>보 건</u>	<u>6</u>			<u>6</u>			보 건	6			6		

※ 괄호 ()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임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환경	3	0			3		환경	3				3	
시설	18	14			4		시설	18	14			4	
방송통신	1	1					방송통신	3	3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전산	2	2					행정+전산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4	2			2		행정+시설	4	2			2	
보건+의료기술 +간호	1			1			보건+의료기술 +간호	1			1		
방호	2				2		방호	2	2				
운전	20	6		3	11		운전	21	9		3	9	
위생	0	0			0		시설관리	2	1			1	
시설관리	2	1			1		건축운영	1				1	
건축운영	1				1		전화상담운영	2	2				
전화상담운영	2	2					전기운영	1				1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0	3			7	
기계운영	10	1			9		화공운영	1				1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8	4			1	3
사무운영	10	6			1	3	연구직계	17	9			8	
연구직계	17	3			14		학예연구사	11	8			3	
학예연구사	11	2			9		환경연구사	5				5	
환경연구사	5				5		기록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지도직계	3	2			1	
지도직계	3	2			1		농촌지도사	3	2			1	
농촌지도사	3	2			1								

【 관계법령 발췌본 】

관 계 법 령	내 용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 계 법 령	내 용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